2016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결산분석시리즈 Ⅰ

2016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 국회운영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2017. 8.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이 보고서는 「국회법」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정부가 제출한 2016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총수입 401.8조원, 총지출 384.9조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16.9조원 흑자, 관리재정수지는 22.7조원 적자를 기록하여 2016년 추경 전망보다 각각 14.4조원, 16.3조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가 상당하고 국가 채무가 증가하고 있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은 배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6회계연도 결산분석시리즈」를 발간하여 국회의 결산 심사를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분석시리즈」는 「총괄 분석」을 비롯하여 「위원회별 분석」, 「2015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성인지 결산서 분석」, 「결산 분석 종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번 「총괄 분석」에서는 12대 분야별 결산, 국세수입 등 재정총량에 대하여 심층 분석하고, 자치단체보조사업 분석 등 유형별 분석주제를 대폭 확대하였으며, 청년일자리 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하여 보다 거시적인 시각에서 재정 지출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부처 사업뿐만 아니라 46개 주요 공공기관의 결산 분석을 추가하여 재정 전반을 빠짐없이 살펴보고자 노력하였고, 「2015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에서는 결산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국회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를 분석·정리하였으며, 「성인지 결산서 분석」에서는 국가성평등지수와 연계하여 양성평등제고를 위해 보다 중점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결산분석시리즈가 결산심사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국회예산정책처는 앞으로도 국회의 예·결산심사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 8월

국회예산정책처장 김 춘 순

차 례

CONTENTS

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Ⅰ. 결산 개요 / 3

1. 현 황 ····· 3
2. 2016년도 예산 관련 국회 논의사항 ····· 5
3. 2016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 6

Ⅱ. 개별 사업 분석 / 7

1. 국정평가관리 정책연구용역 공개 확대 필요 ····· 7
2. 정보화추진(정보화) 사업의 성과관리 강화 필요 ····· 10

[대통령경호실(現 대통령경호처 소관)]

Ⅰ. 결산 개요 / 15

1. 현 황 ····· 15
2. 2016년도 예산 관련 국회 논의사항 ····· 17
3. 2016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 18

Ⅱ. 개별 사업 분석 / 19

(現 대통령경호처 소관)

1. 경호안전교육원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 19

[국회]

Ⅰ. 결산 개요 / 25

1. 현 황 ····· 25
2. 2016년도 예산 관련 국회 논의사항 ····· 27
3. 2016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 28

Ⅱ. 주요 현안 분석 / 29

1. 국회둔치주차장 환경 개선 필요 ····· 29

Ⅲ. 개별 사업 분석 / 33

1. 도서관자료 납본보상 제도 운영 개선 필요 ····· 33

CONTENTS

[국가인권위원회]

Ⅰ. 결산 개요 / 39

1. 현 황 ····· 39
2. 2016년도 예산 관련 국회 논의사항 ····· 41
3. 2016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 42

Ⅱ. 주요 현안 분석 / 43

1.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 사업 관련 개선과제 ····· 43
   1-1.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에 대한 만족도 제고 필요 ····· 44
   1-2. 인권교육전문가 및 강사 양성제도 개선 필요 ····· 46
   1-3. 지역인권체험관과 지역인권교육센터의 연계 강화 필요 ····· 48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Ⅰ. 결산 개요 / 55

1. 현 황 ····· 55
2.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관련 국회 논의사항 ····· 59
3. 2016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 60

Ⅱ. 주요 현안 분석 / 61

1. 2016년 예비비 집행 사업 분석 ····· 61
   1-1. 국가배상금 지급 및 형사보상 사업의 연례적 예비비 집행 등 ····· 63
   1-2.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 사업의 집행 투명성 제고 필요 등 ····· 66
   1-3. 출입국사무소 시설운영 사업의 예비비 집행상 문제점 ····· 69
   1-4.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사업의 연례적 초과집행 개선 필요 ····· 73
2. 법무부 특수활동비의 통제 강화 필요 ····· 76
3.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업법제 선진화 사업의 내역사업 정비 필요 ····· 78
   3-1. 서울국제중재센터 보조재원 이원화 개선 필요 ····· 78
   3-2.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 사업의 별도 운영 재검토 필요 ····· 81

Ⅲ. 개별 사업 분석 / 83

1. 검찰청 자료 보안 강화를 위한 컴퓨터 망(인터넷망/업무망) 분리 실적 저조 ····· 83
2. 외부 회의장 임차료 절감 필요 ····· 85
3. 형사법 정비 사업 예산의 목적 외 사용 ····· 87
4. 법무연수원의 특근매식비 연말 집중 집행 개선 필요 ····· 89
5.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 재원 정비 필요 ····· 91
6. IOM 이민정책연구원의 지방자치단체 보조 및 자체수입 확대 노력 필요 ····· 95
7. 국립법무병원(공주 치료감호소)의 의료환경 기준 준수 필요 등 ····· 97

CONTENTS

[법제처]

Ⅰ. 결산 개요 / 103

1. 현 황 ····· 103
2. 2016년도 예산 관련 국회 논의사항 ····· 105
3. 2016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 106

Ⅱ. 주요 현안 분석 / 107

1.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원회 참석 저조 문제 ····· 107

Ⅲ. 개별 사업 분석 / 109

1. 어린이법제관 사업에 대한 자체성과평가의 객관성 확보 필요 ····· 109
2. 세계법제정보센터 홍보 예산 집행 방식 부적정 ····· 112
3. 법제교육센터 공공요금 집행 부진 ····· 114

[감사원]

Ⅰ. 결산 개요 / 119

1. 현 황 ····· 119
2. 2016년도 예산 관련 국회 논의사항 ····· 121
3. 2016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 122

Ⅱ. 개별 사업 분석 / 123

1. 정보화사업의 사업추진일정을 감안한 예산편성 필요 ····· 123
2. 감사청구 심사 · 자문위원회의 적정예산 편성 필요 ····· 125

[대법원]

Ⅰ. 결산 개요 / 131

1. 현 황 ····· 131
2.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관련 국회 논의사항 ····· 135
3. 2016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 136

CONTENTS

Ⅱ. 개별 사업 분석 / 137

1. 국선변호인 지원대상 기준 명시 필요 ····· 137
2. DB 구독 계약 시 회계연도 독립 원칙 준수 필요 ····· 139
3. 양형위원회 의견수렴절차 활성화 필요 ····· 141
4. 법원공무원교육원 강의실 확충공사비 집행 부적절 ····· 144
5. 법원공무원교육원 인건비 과다편성 ····· 146

[헌법재판소]

Ⅰ. 결산 개요 / 151

1. 현 황 ····· 151
2. 2016년도 예산 관련 국회 논의사항 ····· 153
3. 2016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 154

Ⅱ. 개별 사업 분석 / 155

1. 모범국선대리인 보수 지급근거 마련 필요 ····· 155

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Ⅰ 결산 개요

1 현 황

가. 총수입·총지출 결산

2016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결산은 일반회계만으로 구성된다. 2016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400만원(5.3%)이 감소한 7,1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2억 8,000만원(79.8%)이 감소하였다.

[2016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2015 결산액(A)	2016				전년 대비 (C-A)
		예산액		결산액 (C)	추경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 산	351	75	75	71	4	△280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2016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46억 5,600만원(5.2%)이 감소한 843억 6,7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12억 7,800만원(1.5%)이 감소하였다.

[2016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2015 결산액(A)	2016				전년 대비 (C-A)
		예산액		결산액 (C)	추경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 산	85,645	89,023	89,023	84,367	△4,656	△1,278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오명희 예산분석관(ruby728@assembly.go.kr, 788-4644)

나. 세입·세출 결산

2016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7,500만원이며, 이 중 7,083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다.

[2016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세입 예산현액 (A)	징수 결정액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75	75	75	71	71	0	0	94.7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2016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890억 2,300만원이며, 이 중 843억 6,700만원을 지출하고 46억 5,6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16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89,023	89,023	89,023	84,367	0	4,656	94.8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2 2016년도 예산 관련 국회 논의사항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국정평가관리 사업**이 있다.

국정평가관리 사업은 관람객 기념품 등과 대통령 친서 발송의 집행부진을 이유로 1억원이 감액(40억 3,500만원 → 39억 3,500만원)되었다.[1)]

1) 국회운영위원회, 「201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5.11.
국회,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5.12.

3 2016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대통령의 효율적 보좌를 목표로 국정평가관리 등 국정운영 지원과 정보화 추진을 2016년도 주요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16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국정평가관리사업의 정책연구결과 공개가 미흡한 특징이 있었다.

국정운영의 정책방향 정립을 위한 국정평가관리사업은 정책연구용역 추진에 3억 6,500만원을 집행하였다. 2016년도에 28건의 정책연구를 수행하였으나,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4건만 공개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비공개되고 있다.

II 개별 사업 분석

1 국정평가관리 정책연구용역 공개 확대 필요

가. 현 황

국정평가관리 사업[1]은 국민과의 소통 강화 및 여론조사,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해 올바른 정책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국정평가관리 사업의 2016년도 예산액 39억 3,500만원 중 83.2%인 32억 7,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6억 6,200만원을 불용하였다.

[국정평가관리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국정평가관리	3,935	3,935	0	0	3,935	3,273	0	662
정책연구비	400	400	0	0	400	365	0	35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나. 분석의견

국정평가관리 사업의 정책연구결과보고서에 대한 공개 및 활용도 제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비서실은 동 사업을 통해 2013년에 26건, 2014년에 26건, 2015년에 31건의 정책연구를 수행하였으나 이 중 5건을 공개하였고, 2016년에도 28건의 정책연구를 수행하였으나 4건만 공개하였다. 참고로, 2013회계연도 및 2014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국회는 동 사업의 정책연구결과보고서를 공개하여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시정요구한 바 있다.[2]

오명희 예산분석관(ruby728@assembly.go.kr, 788-4644)

1) 예산코드: 일반회계 1131-301

[2013년~2016년 국정평가관리 정책연구용역 실시 및 공개 현황]

(단위: 건)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4.30현재)
총 건수		26	26	31	28
프리즘[1] 등록 및 공개현황	등록 건수	0	3	2	4
	공개 건수	0	3	2	4
	미공개 건수	26	23	29	24

주: 1) 정책연구용역관리시스템(PRISM)은 중앙부처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용역 과정을 관리하고 연구용역결과물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연구용역체계를 구축하여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고 연구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는 시스템으로 행정자치부가 운영함(http://www.prism.go.kr).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3]에서는 비공개대상 정보의 경우에도 비공개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 지침」을 내부적으로 수립 운용 중이며, 동 지침에서 정책입안이나 내부검토의 비공개사항이 포함된 경우는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운영하고 있어 공개가능한 수준의 보고서만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건수가 낮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동 지침에 따른 정책입안이나 내부검토의 비공개 범위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4]는 공개가 가능한 경우 계약체결

2)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2014.10.2.) 및 「2014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2015.9.8.)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8. (생략)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4)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
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3.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내용, 정책연구 결과 및 평가결과,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등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비서실은 정책연구용역의 비공개 범위에 대한 세부기준을 수립·공개하고,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가능한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정책연구 활용도 제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③「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정보화추진(정보화) 사업의 성과관리 강화 필요

가. 현 황

정보화추진(정보화) 사업[1]은 대통령비서실 직원의 업무능률 증진을 위한 각종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이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정보화추진(정보화) 사업의 2016년도 예산현액 63억 5,100만원 중 91.1%인 57억 8,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5억 6,700만원을 불용하였다.

[정보화추진(정보화)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정보화추진(정보화)	6,351	6,351	0	0	6,351	5,784	0	567
운영비	3,411	3,411	0	0	3,411	3,117	0	294
업무용역비	1,569	1,569	0	0	1,569	1,392	0	177
자산취득비	1,371	1,371	0	0	1,371	1,275	0	96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나. 분석의견

정보화추진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정지원 사업[2]은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 직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프로그램이다. 대통령비서실은 동 프로그램 내에서 전산환경을 안정적으로 구축·관리하는 정보화 단위사업[3]을 성과관리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여 성과관리를 하고 있으며, 동 단위사업의 세부사업은 정보화추진(정보화) 사업 1개로 구성된다.

대통령비서실은 정보화추진(정보화) 사업 예산에 편성된 업무용역비 15억 6,900만원

오명희 예산분석관(ruby728@assembly.go.kr, 788-4644)

1) 예산코드: 일반회계 1132-500

2) 예산코드: 일반회계 1100

3) 예산코드: 일반회계 1132

중 13억 9,200만원을 집행하여 청와대홈페이지 개편 및 운영, 업무전산개발, 기록관리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하였다.[4)]

2016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의 효율적 보좌를 위해 업무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국정지원 프로그램은 "정보서비스 가용성"을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동 프로그램 내 정보화 단위사업의 성과지표는 "부서별 서비스요청에 따른 조치실적"을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서비스요청 처리대장에 기록된 부서의 서비스요청에 따른 조치율을 측정하여 성과달성 결과를 산출하고 있다.

[정보화 사업의 2016년 성과지표 현황]

구분		국정지원 프로그램 목표			정보화 단위사업		
		목표	성과지표수	달성지표수	구분	성과지표수	달성지표수
성과 달성 현황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업무역량 제고	1개	1개	대통령 국정운영의 효율적 보좌를 위한 정보화 기반 구축 및 업무시스템 전산화	1개	1개
성과지표		정보서비스 가용성(%)			부서별 서비스 요청에 따른 조치 실적(%)		
측정산식		가용성(%)=(1-서비스중단시간/총서비스가용시간)×100			(서비스 처리건수/서비스 요청건수)×100		
목표 대비 달성률	목 표	99.8%			95%		
	실 적	99.9%			100%		
	달성률	100.1%			105.3%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2016회계연도 성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이 "정보서비스 가용성"과 "부서별 서비스요청에 따른 조치 실적"을 통합하여 측정하지 않고 프로그램과 단위사업에서 각각 측정하고 있어 정보화사업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시스템 상의 로그인시간을 확인하지 않고 정보시스템 장애처리대장에서 서비스 중단시간을 확인하거나 서비스 요청건수 대비 처리건수로 처리율을 확인하는 것은 서비스의 신속·정확성이나 서비스처리에 대한 만족도 등을 측정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4) 대통령비서실은 청와대홈페이지(어린이홈페이지, 다국어홈페이지 포함) 개편 및 운영에 5억 7,900만원, 업무전산개발에 4,700만원, 기록관리시스템 개선에 7억 6,600만원을 집행하였다.

향후 대통령비서실은 정보화사업의 성과지표에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를 추가하고, 성과지표를 측정하기 위한 자료수집방법에 시스템로그인 자료를 포함하는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성과관리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각 부처 정보화사업 성과지표 현황]

운영부처	세부사업명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국회	입법 정보화	정보시스템 사용자만족도(%)	5점 척도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100,75,50,25,0)	전자문서시스템 통한 설문조사
국무총리 비서실	국정운영 정보화	국정관리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개인별 응답척도/n (총 응답수)	온라인 설문조사
경찰청	교통행정 전산화	교통전산시스템 운용 안정도	연간시스템 장애시간(분) 산출	광주 정부통합 전산센터 시스템 로그 자료, 장애일지 자료기반
민주평화 통일자문 회의	정보화 사업 추진	정보시스템 운영 만족도(점)	홈페이지 50% +통합관리시스템 50% ※ 홈페이지5점, 통합관리 시스템 10점 척도방식	만족도 설문조사
		정보시스템 요청 처리율	(요청처리완료 건수/ 요청요구건수) ×100	사용자 요구사항 및 운영요청 처리 일지
방위 사업청	방위사업 정보화	정보화만족도 (0.4%)	조사대상 : 전직원 조사방법 : 리커트 척도 (5단계 척도)/반기별 실시 조사항목 : PC설치 등	업무포탈 통해 정보화업무 서비스에 대한 직원만족도 조사
		정보화 유지보수 조치율 (0.6%)	완료기한 내 처리건수 / 전체 처리건수×100 ※ 완료 기준일: 사용자의 완료 희망일	서비스수준 종합 평가 보고자료
국가 인권위	인권정보 시스템 구축 · 운영	사용자만족도(점)	답변점수/총응답자수 (5점측도 계량화)	설문조사결과
		시스템 가동율(%)	{1-(장애시간/ 서비스가동시간)}×100	일일보고서
		서비스요청 적기처리율(점)	∑(조치일시-문의일시 ≤3시간)÷응대건수×100	CTS시스템 로그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대통령경호실
(現 대통령경호처 소관)

Ⅰ 결산 개요

1 현 황

가. 총수입·총지출 결산

2016회계연도 대통령경호실[1] 소관 결산은 일반회계만으로 구성된다.

2016회계연도 대통령경호실 소관 총수입은 예산액 대비 14억 900만원(1,515%)이 증가한 15억 2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14억 800만원(1,497.8%)이 증가하였다.

[2016회계연도 대통령경호실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2015 결산액(A)	2016				전년 대비 (C-A)
		예산액		결산액 (C)	추경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 산	94	93	93	1,502	1,409	1,408

자료: 대통령경호실

2016회계연도 대통령경호실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59억 1,300만원(7.0%)이 감소한 785억 5,6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27억 8,800만원(3.7%)이 증가하였다.

[2016회계연도 대통령경호실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2015 결산액(A)	2016				전년 대비 (C-A)
		예산액		결산액 (C)	추경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 산	75,768	84,469	84,469	78,556	△5,913	2,788

자료: 대통령경호실

오명희 예산분석관(ruby728@assembly.go.kr, 788-4644)

1) 「정부조직법」 개정(2017.7.26. 시행)으로 대통령경호처로 개편됨.

나. 세입·세출 결산

2016회계연도 대통령경호실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9,300만원이며, 15억 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다.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증가한 사유는 국유재산 교환차액 발생으로 토지매각대 13억 8,700억원을 수납하였기 때문이다.

[2016회계연도 대통령경호실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세입 예산현액 (A)	징수 결정액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93	93	93	1,502	1,502	0	0	1,614.8

자료: 대통령경호실

2016회계연도 대통령경호실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845억 4,500만원이며, 이 중 92.9%인 785억 5,6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7,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8억 1,4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16회계연도 대통령경호실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84,469	84,469	84,545	78,556	175	5,814	92.9

자료: 대통령경호실

한편, 「정부조직법」 개정(2017.7.26. 시행) 및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는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경호처로 개편하였다.[2)]

2) 동 보고서의 결산 현황은 2016회계연도 정부 결산보고서에 따라 조직개편 이전인 舊 대통령경호실 소관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2 2016년도 예산 관련 국회 논의사항

대통령경호실(現 대통령경호처)의 2016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되거나 감액된 사업은 없었으며, 부대의견으로 채택된 사항도 없었다.

3 2016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대통령경호실(現 대통령경호처)은 ① **요인 및 국빈경호** 강화, ② **경호장비시설개선과 경호안전교육원운영**을 2016년도 주요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16회계연도 대통령경호실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경호안전교육원 사업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2014년부터 추진한 경호종합훈련장 증축공사는 2016년 5월 31일에 준공되었는데, 경비초소 신축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이 있었다. 또한, 준공지연으로 경호안전교육원의 개원도 지연되었으며, 이에 따라 경호안전교육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의 집행률이 저조하였다.

II 개별 사업 분석

【現 대통령경호처 소관】

1 경호안전교육원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가. 현 황

경호안전교육원 운영 사업[1]은 2016년도 신규사업으로서 경호안전교육원 운영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통령경호실은 경호안전교육원 운영 사업의 2016년도 예산현액 25억 2,300만원 중 68.1%인 17억 1,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8억 400만원을 불용하였다.

[경호안전교육원 운영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경호안전 교육원 운영	2,523	2,523	0	0	2,523	1,719	0	804

자료: 대통령경호실

구체적으로, 인건비는 예산액 6억 8,100만원 중 63.3%인 4억 3,100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 5,000만원을 불용하였으며, 운영비는 예산액 9억 2,800만원 중 55.3%인 5억 1,300만원을 집행하였고 4억 1,500만원을 불용하였다.

오명희 예산분석관(ruby728@assembly.go.kr, 788-4644)

1) 예산코드: 일반회계 1231-304

[경호안전교육원 운영 사업의 인건비 및 운영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경호안전교육원운영	2,523	2,523	0	0	2,523	1,719	0	804
인건비	681	681	0	0	681	431	0	250
운영비	928	928	0	0	928	513	0	415
건설비	352	352	0	0	352	312	0	40
유형자산	562	562	0	0	562	463	0	99

자료: 대통령경호실

나. 분석의견

첫째, 당초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경호종합훈련장 경비초소를 신축하였는데, 향후 대통령경호실은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대통령경호실은 구 경호처의 경호종합훈련장을 경호안전교육원 건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2년 12월에 증축공사 사업비를 194억원으로 확정하고 2013년 12월에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4년 5월 착공, 2016년 5월 완공하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업계획에 없었던 경호종합훈련장 경비초소(73.23㎡)를 설치하기 위해 1억 3,200만원을 집행하였다. 이에 대해 대통령경호실은 경호종합훈련장 완공 이후 경비목적 필요에 따라 경비초소를 불가피하게 추가로 설치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향후 대통령경호처는 사업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하고, 수립된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호안전교육원 인건비 및 운영비 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4조[2]의 개정으로 2016년부터 대통령경호실 소속의 전문교육

2)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4조(전문교육훈련기관 등) ① 특수한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교육훈련과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전문교육훈련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정부조직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공무원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두 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교육훈련하는 전문교육훈련기관(이하 "통합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전문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외의 사람을 교육훈련할 수 있다.

훈련기관인 경호안전교육원은 대통령경호실 소속 공무원 외의 사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3)]

그러나 2016년도 경호안전교육원 운영 사업의 인건비 및 운영비 집행률이 각각 63.3%, 55.3%로 저조한 것은 경호종합훈련장 준공 지연(2016년 4월→2016년 5월 31일)에 따른 개원 지연(2016.7.15.), 인건비 지급 개월 수 과다 산정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016년도 경호안전교육원 운영 사업 인건비 및 운영비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비목	세목	내역	예산액	집행액
인건비	기타직 보수	1.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26명×262만원×10개월	681	431
운영비	일반수용비	1. 각종청사유지소모품·기본물품 1억 7,700만원 2. 경호종합훈련 소모품비 9,400만원	271	194
	공공요금 및 제세	1. 전산 및 통신회선 등 9,300만원 2. 책임보험, 전기, 상하수도 등 2억 100만원	295	125
	임차료	1. 특수운전 훈련장 임차 4,500만원 2. 정수기 등 장비 임차 3,600만원	81	32
	연료비	1. 보일러, 가스비 등	124	43
	시설장비 유지비	1. 청사시설 유지보수 4,300만원 2. 교육 및 훈련시설 유지보수 5,700만원	99	94
	재료비	1. 경호안전교육원 사격장 교보재 등	58	25
	소 계		928	513

자료: 대통령경호실

향후 대통령경호처는 경호안전교육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④ 통합교육훈련기관의 조직, 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대통령경호실은 2016년도에 청와대, 국방부, 경찰청, 국민안전처 등 15개 경호유관기관의 경호경비 및 안전실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경호전문과정', UAE 왕실경호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10개국을 대상으로 '국제경호안전과정',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VIP행사준비 실무과정'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자료: 대통령경호실).

국 회

Ⅰ 결산 개요

1 현 황

가. 총수입·총지출 결산

2016회계연도 국회 소관 결산은 일반회계만으로 구성된다.

2016회계연도 국회 소관 총수입은 예산액 대비 8억 3,200만원(44.1%)이 증가한 27억 1,7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6억 6,900만원(32.7%)이 증가하였다.

[2016회계연도 국회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2015 결산액(A)	2016				전년 대비 (C-A)
		예산액		결산액 (C)	추경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일반회계	2,048	1,885	1,885	2,717	832	669

자료: 국회

2016회계연도 국회 소관 총지출은 예산액 대비 315억 1,300만원(5.7%)이 감소한 5,245억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65억 4,600만원(1.3%)이 증가하였다.

[2016회계연도 국회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2015 결산액(A)	2016				전년 대비 (C-A)
		예산액		결산액 (C)	추경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일반회계	517,954	556,013	556,013	524,500	△31,513	6,546

자료: 국회

오명희 예산분석관(ruby728@assembly.go.kr, 788-4644)

나. 세입·세출 결산

2016회계연도 국회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8억 8,500만원이며, 29억 6,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1.5%인 27억 1,700만원을 수납하고 2억 5,100만원을 미수납하였다.

[2016회계연도 국회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세입 예산현액 (A)	징수 결정액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1,885	1,885	1,885	2,968	2,717	251	0	144.1

자료: 국회

2016회계연도 국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5,580억 1,300만원이며, 이 중 94.0%인 5,245억원을 지출하고 51억 8,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83억 3,4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16회계연도 국회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556,013	556,013	558,013	524,500	5,180	28,334	94.0

자료: 국회

2 2016년도 예산 관련 국회 논의사항

국회의 2016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의원수당, ② 헌정회 지원금** 등이 있다.

의원수당은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여 9억원이 감액(318억원 → 309억원)되었고, 헌정회 지원금은 연로회원지원금 집행실적 추이에 따라 3억원이 감액(80억원 → 77억원)되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본관 창문교체**가 있다.

본관 창문교체는 단열 성능이 우수한 창문으로의 교체를 통한 에너지 효율화를 위하여 18억원이 증액(신규)되었다.

3 2016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국회는 ① 제20대 국회 개원 대비 의정활동 인프라 확충 및 영상회의시스템 개선을 통한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환경 조성, ② 열린국회마당, 시민의정연수 등 국민 참여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국회와 국민간 소통 및 공감 증진, ③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및 장애인 시청 지원 확대를 통한 장애인 편의 인프라 확충 등 사회적 약자 배려 ④ 입법활동 및 예결산 심의 등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입법지원조직 역량 강화를 2016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16회계연도 국회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국회둔치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국회사무처는 한강 둔치 61,932㎡를 주차장 및 체육시설 사용 목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아 국회둔치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둔치주차장의 주차요금을 2014년부터 세입처리하고 있다. 「국회교통관리 및 운영에 관한 내규」 제10조는 둔치주차장 시설물 및 주차차량의 관리·보호를 위해 관리인 및 경비원을 배치한다고만 규정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시설기준 고려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II 주요 현안 분석

1 국회둔치주차장 환경 개선 필요

가. 현 황

국회는 국내경내 출입 및 주차차량 과다로 인한 교통혼잡 문제를 해결하고 국회청사 출입차량의 주차 편의를 위해 「국회교통관리규정」 제14조 · 제15조[1] 및 「국회교통관리 및 운영에 관한 내규」 제10조[2]에 따라 국회의사당 경내와 한강둔치에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의회경호 및 방호 사업[3]의 2016년도 예산 중 둔치주차장 관리 및 의정관 지하주차장 출입통제 위탁사업비로 3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다.

[의회경호 및 방호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의회경호 및 방호	2,474	16	2,490	2,270	0	220
둔치주차장 관리 및 의정관 지하주차장 출입통제 위탁사업비	350	0	350	350	0	0

자료: 국회사무처

오명희 예산분석관(ruby728@assembly.go.kr, 788-4644)

1) 「국회교통관리규정」
제14조(경내주차장의 운영) ① 사무총장은 국회의사당 경내의 교통 환경 및 「주차장법」에서 규정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등을 고려하여 경내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경내주차장의 구역설정, 명칭 · 이용대상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15조(둔치주차장의 운영) ① 사무총장은 국회상주근무자 및 국회방문인 등의 주차를 위하여 둔치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둔치주차장의 운영시간 및 주차장 시설물 보호 · 주차차량 보호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③ 사무총장은 주차수요의 억제를 위하여 둔치주차장을 이용하는 국회 방문인 및 일반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사무총장은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둔치주차장의 주차면수를 확대 또는 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국회교통관리 및 운영에 관한 내규」 제10조(둔치주차장의 운영) ① 사무총장은 둔치주차장의 시설물 및 주차차량의 관리 · 보호를 위하여 관리인 및 경비원을 배치한다.
② 둔치주차장의 운영시간 및 요금부과 기준·금액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3) 예산코드: 일반회계 2031-310

국회사무처는 한강 둔치 61,932㎡를 주차장 및 체육시설 사용 목적으로 점용허가[4]를 받아 주차전용 주차면(836면)과 체육시설로도 활용하는 주차면(268면)을 합한 총 1,104면을 국회둔치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둔치주차장은 경내에 주차하지 못하는 국회직원·방문인 등이 사용하고 있으며, 국회사무처는 둔치주차장 사용자 중 일반인 및 국회방문인·행정부직원 등에 대해서는 주차요금[5]을, 국회직원 등의 둔치운동장 사용에 대해서는 운동장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2014년 수입금부터 이를 세입처리하고 있다.

[2016년 국회둔치주차장 사용료 수납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주차장 사용료	체육시설 사용료	합 계
수납액	212	3	215

자료: 국회사무처

나. 분석의견

국회사무처는 국회둔치주차장의 주차환경을 국회경내주차장과 유사하게 조성하는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국회교통관리규정」 제14조는 경내주차장은 경내의 교통환경 및 「주차장법」에서 규정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등을 고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제15조제2항은 둔치주차장 시설물 보호, 주차차량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교통관리 및 운영에 관한 내규」 제10조는 둔치주차장 시설물 및 주차차량의 관리·보호를 위해 관리인 및 경비원을 배치한다고만 규정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시설기준 고려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주차장법」에서는 주차장을 정비·관리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정하고 있으며,[6] 부설주차장의 감시 장치는 170센티미터의 높이에 있는 사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4) 「하천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한강 둔치의 사용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5) 국회 둔치주차장 일반인 이용 주차요금: 승용차(기본30분 2,000원, 이후 10분당 300원, 1일 최대 15,000원, 선납시 12,000원), 버스등 대형차량(승용차요금의 3배)

6) 「주차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주차장의 설치·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치하여야 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과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같아야 하며,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게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조도 및 감시장치 시설기준]

구분	주차장법
조도	가. 주차구획 및 차로: 최소 조도는 1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최소 조도의 10배 이내 나. 주차장 출구 및 입구: 최소 조도는 30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없음 다.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 최소 조도는 5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없음
감시장치	가. 방범설비는 주차장의 바닥면으로부터 170센티미터의 높이에 있는 사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같아야 한다. 다.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1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자료: 「주차장법」 제6조(주차장설비기준등)제1항,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제2항을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2011년에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로부터 둔치주차장의 감시장치(CCTV) 45대를 이관[7] 받은 후 7대를 폐기하였고, 1대만 신규로 구입(2016년)하였다. 2017년 현재 둔치주차장의 감시 장치는 37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녹화장치는 3대만 운영하고 있다.

또한 현재 국회둔치주차장은 '주차장 및 체육시설'로 점용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나, 「국회체육시설 사용내규」 제2조[8]에 따라 국회운동장 등의 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7)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의 둔치주차장 감시장치 국회사무처 이관 현황]

시 설 명	규 격	수 량	비고(부대시설)
보안카메라(CCTV)	0.00004LUX	45대	카메라 폴 29본 및 기타 부대시설
녹화장치(DVR)	16CH, 1.2TB	3대	외함 1면 포함

자료: 국회사무처

8) 「국회체육시설 사용내규」 제2조(체육시설의 구분) 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회운동장 : 축구장·육상트랙·배구장 및 농구장
2. 테니스장 : 제1 부터 제4 테니스장
3. 유도장
4. 태권도장
5. 둔치운동장
6. 국회의정관 체력단련실
7. 의원회관 건강관리실
8. 의원회관 직원건강관리실

점을 고려할 때 둔치운동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9]에 따라 반드시 설치·운영되어야 할 직장체육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국회사무처는 국회둔치주차장 일부(약 268면)를 주차구획·차량 동선 안내 등을 표시하지 않고 비포장인 상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둔치주차장을 주차장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의 주차장 전용으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완전 변경할 경우 운동장 이용 희망자들의 반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일반 국민의 주차장 이용에 대해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고, 국회경내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방문인 및 국회직원이 둔치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회둔치주차장의 주차시설 환경은 이용자에 대한 편의 제공, 주차차량 보호 등을 위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3]에서는 직원이 500명 이상인 직장에서는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로 구분하는 체육시설 중 2종 이상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Ⅲ 개별 사업 분석

1 도서관자료 납본보상 제도 운영 개선 필요

가. 현 황

도서관자료확충 사업[1]은 입법활동지원 및 대국민 정보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국내외 단행본, 정기간행물 등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문헌정보를 축적하고 도서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국회도서관은 도서관자료확충 사업의 2016년도 예산현액 47억 3,200만원 중 46억 8,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400만원을 불용하였다.

[도서관자료확충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도서관자료확충	4,732	4,732	4,732	4,688	0	44
일반도서구입	1,537	1,537	1,537	1,531	0	6
정기간행물구입	993	993	993	975	0	18
납본보상금 및 수수료	790	790	790	790	0	0

자료: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법」 제7조[2]에서는 누구든지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 2부를 도서관에 납본하도록 하고, 도서관은

오명희 예산분석관(ruby728@assembly.go.kr, 788-4644)

1) 예산코드: 일반회계 3033-300

2) 「국회도서관법」 제7조(도서관자료의 납본 등) ① 공공기관등이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 2부와 디지털 파일을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서관은 공공기관등의 온라인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등이 아닌 자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는 제외한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 2부를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서관은 납본한 자에게 그 자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⑥ 납본의 절차·보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납본한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국회도서관 납본도서 수집 지침」[3]에 따라 발행 후 5년 이내의 도서를 사단법인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잡지협회가 납본대행하게 하고, 납본도서 2부에 대해 각각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정가[4]의 50%를 보상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납본대행수수료는 납본된 도서 수량 전체에 대해 지급하고 있다.[5] 2016년도 납본 자료에 대한 보상금은 7억 1,600만원을 지급하였고 납본대행자에 대한 납본대행수수료는 7,400만원을 집행하였다.

[2016년도 납본보상금 및 수수료 지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납본		보상금 지급			납본대행수수료 지급		
	종수	수량	종수	수량	집행액	종수	수량	집행액
일반도서	25,031	50,062	25,031	50,062	547	25,031	50,062	57
정기간행물	1,069	17,523	1,069	17,523	87	1,069	17,523	17
CD-ROM	1,682	1,682	1,682	1,682	62	-	-	-
DVD	2,794	2,794	2,794	2,794	20	-	-	-
계	30,576	72,061	30,576	72,061	716	26,100	67,585	74

주: 납본대행수수료는 일반도서와 정기간행물에만 지급됨.
자료: 국회도서관

3) 「국회도서관 납본도서 수집 지침」
제2조(납본도서의 수집) ① 국회도서관장은 모든 납본도서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납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는 도서(이하 "납본제외도서"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통사항
사. **발행연도가 현재를 기준으로 5년 이전에 발간된 도서**
③ 국회도서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역사적·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도서는 수집하여야 한다.
제6조(납본 대행 및 수수료) ① 납본수집 담당 부서의 장은 납본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납본 대행기관을 통하여 도서를 일괄하여 납본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본을 대행하는 기관에는 납본 책 수에 따라 예산범위 안에서 납본 대행 수수료를 지급한다.

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①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하 "정가"라 한다)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간행물에 표시하여야 한다.

5) 2016년도 예산에는 납본대행수수료를 책당 1,100원씩 67,000책 기준으로 7,400만원을 편성하였다. 국회도서관은 2016년도에 일반도서는 발행일 기준 30일전 납품의 경우 1,170원 30일 이후 납품의 경우 1,101원, 정기간행물은 발행일 기준 30일전 납품의 경우 969원, 30일 이후 납품의 경우 915원씩 납부대행수수료를 지급하였다.

나. 분석의견

국회도서관은 신간도서의 납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납본도서 수집 및 납본보상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국회도서관은 2016년도에 일반도서 50,062권, 정기간행물 17,523권, CD-ROM 1,682개, DVD 2,794개를 납본받았다.

이 중 CD-ROM, DVD를 제외한 일반도서 총 25,031종 가운데 발행 후 30일이 경과한 자료는 38%인 9,505종이고, 정기간행물은 총 8,790종 가운데 발행 후 30일이 경과한 자료는 17.0%인 1,492종이다.

[국회도서관 납본도서 현황]

(단위: 권)

구분	발행 후 30일 이전		발행 후 30일 초과		전체	
	종수	수량	종수	수량	종수	수량
일반도서	15,526	31,052	9,505	19,010	25,031	50,062
정기간행물	7,298	14,594	1,492	2,929	8,790	17,523

한편,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 「도서관법」 제20조제1항에 누구든지 도서관자료 발행일 30일 이내에 이를 납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6]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는 납본보상에 대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

6) 「도서관법」

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 누구든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를 제외한다. 다만, 온라인 자료 중 제21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7조(과태료) ①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해당 도서관자료 정가(그 도서관자료가 비매자료인 경우에는 해당 발행 도서관자료의 원가)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서관법 시행령」

제13조의4(도서관자료의 보상 절차 등) ① 제13조제7항에 따라 도서관자료 납본서를 제출하는 자나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 수집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도서관자료(제13조의2에 따른 온라인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청구서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라 보상청구서를 받으면 도서관자료의 시가에 납본 또는 수집된 도서관자료 중 이용자의 열람에 제공되는 도서관자료의 부수를 곱한 금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정가를 표시한 도서관자료에 대해서는 정가를 시가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유사한 자료의 통상적 거래가격과 도서관자료의 시가가 상당

있다. 향후 국회도서관은 법률의 규정대로 발행 후 30일 이내에 납본을 받을 수 있도록 납본도서 수집 및 보상제도의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한 차이가 있거나 그 밖에 시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자료의 통상적인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액을 정한다.

④ 국립중앙도서관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청구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상금액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보상금액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⑥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액을 다시 정하여 알리고,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유 없음을 알려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자료의 보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국가인권위원회

Ⅰ 결산 개요

1 현 황

가. 총수입·총지출 결산

2016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결산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2016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1억 3,100만원(595.5%)이 증가한 1억 5,3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1억 4,300만원(1,430.0%)이 증가하였다.

[2016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2015 결산액(A)	2016				전년 대비 (C-A)
		예산액		결산액 (C)	추경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 산	10	22	22	153	131	143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2016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12억 4,000만원(4.4%)이 감소한 269억 3,6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4억 9,000만원(1.9%)이 증가하였다.

[2016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2015 결산액(A)	2016				전년 대비 (C-A)
		예산액		결산액 (C)	추경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 산	26,446	28,176	28,176	26,936	△1,240	490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오명희 예산분석관(ruby728@assembly.go.kr, 788-4644)

나. 세입·세출 결산

2016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2,200만원이며, 1억 5,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다.

[2016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세입 예산현액 (A)	징수 결정액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22	22	22	153	153	0	0	695.5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2016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283억 2,500만원이며, 이 중 95.1%인 269억 3,6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4,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2억 4,9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16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28,176	28,176	28,325	26,936	140	1,249	95.1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2 2016년도 예산 관련 국회 논의사항

국가인권위원회의 2016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되거나 감액된 사업은 없었으며, 부대의견으로 채택된 사항도 없었다.

3 2016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국가인권위원회는 ① 인권관련 법령 · 제도 · 정책 · 관행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를 통한 **인권 기초자료 확보 및 문제개선**, ② 아동 · 노인 · 여성 · 이주민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③ 지역단위 인권문화 접근성 제고를 통한 **인권사각지대 해소**, ④ 인권교육 접근성 제고를 통한 **인권교육 활성화**, ⑤ 정보인권, 기업인권, 북한인권 등 **국제 인권현안 흐름에 대한 선제적 대응 지원**, ⑥ 국내외 **인권단체 및 국제인권기구와의 협력**을 2016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16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인권교육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16년도 인권교육은 교육횟수나 교육인원 등이 양적으로는 확대되었으나 인권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고 있고, 지속적인 인권교육 전문가 및 강사 양성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II 주요 현안 분석

1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 사업 관련 개선과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1]는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교육 · 인권교육강사 양성 및 인권교육콘텐츠 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인권교육의 기획 및 운영 사업[2]은 인권과 밀접한 업무 종사자들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 및 이해도 향상을 위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교육의 기획 및 운영 사업의 2016년도 예산현액 14억 7,800만원 중 96.9%인 14억 3,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600만원을 불용하였다.

동 사업의 주요 내역별 집행액으로는 '인권연수과정 운영' 6억 8,300만원, '사이버 인권교육 운영' 3억 700만원 등이다.

[인권교육의 기획 및 운영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인권교육의 기획 및 운영	1,478	1,478	±25	1,478	1,432	0	46
인권연수과정 운영[1]	685	685	25 △16	694	683	0	11
사이버 인권교육 운영	327	327	0	327	307	0	20

주: 1) 인권연수과정 운영 내역사업에는 공무원 대상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장애분야 인권교육, 인권강사 양성과정, 보육종사자 영유아 인권보호교육 강사양성 등의 내역 사업이 편성되어 있음.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오명희 예산분석관(ruby728@assembly.go.kr, 788-4644)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5.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2) 예산코드: 일반회계 1032-301

지역인권문화확산 사업[3]은 지하철 역사 등 일상생활공간에 지역인권체험관을 설치·운영하는 등 지역별로 인권문화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사업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역인권문화확산 사업의 2016년도 예산현액 4억 5,400만원 중 96.9%인 4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400만원을 불용하였다.

[지역인권문화확산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지역인권문화확산	454	454	0	±43	454	440	0	14
인권체험관 운영	289	289	0	0	289	281	0	8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1-1.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에 대한 만족도 제고 필요

가. 현 황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년도에 인권교육을 총 3,702회, 207,619명에 대해 실시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현황(2014~2016년)]

(단위: 회, 천명,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총 계	횟수(증감률)(A)		2,334	2,509(7.5)	3,702(47.5)
	인원(증감률)(B)		164	145(△11.6)	208(43.4)
연수과정 등	교육횟수	횟수(증감률)(C)	334	438(31.1)	734(67.6)
		비중(C/A)	14.3	17.5	19.8
	교육인원	인원(증감률)(D)	14	18(28.6)	34(88.9)
		비중(D/B)	8.5	12.4	16.3
인권특강	교육횟수	횟수(증감률)(E)	1,506	1,479(△1.8)	1,760(19.0)
		비중(E/A)	64.5	58.9	47.5
	교육인원	인원(증감률)(F)	110	83(△24.5)	96(15.7)
		비중(F/B)	67.1	57.2	46.2
방문 프로그램	교육횟수	횟수(증감률)(G)	206	239(16.0)	380(59.0)
		비중(G/A)	8.8	9.5	10.3
	교육인원	인원(증감률)(H)	5	9(80.0)	6(△33.3)
		비중(H/B)	3.0	6.2	2.9

3) 예산코드: 일반회계 1031-303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이버 교육	교육횟수	횟수(증감률)(I)	228	353(54.8)	828(134.6)
		비중(I/A)	9.8	14.1	22.4
	교육인원	인원(증감률)(J)	35	35(0)	71(102.9)
		비중(J/B)	21.3	24.1	34.1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나. 분석의견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하는 인권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고 있으므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016년도의 인권교육은 전년도 대비 교육 횟수는 47.5%, 교육인원은 43.4%가 각각 증가한 것이다. 특히 인권교육강사 양성 등 연수과정과 사이버교육 부문에 있어 교육횟수는 296회(67.6%), 475회(134.6%) 각각 증가하였고, 교육인원은 16,000명(88.9%), 36,000명(102.9%) 각각 증가하였다. 2016년에 실시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에 대한 만족도 목표치는 전년 대비 0.4점 높게 설정하였으나 실적은 전년 대비 0.34점 낮아 목표대비 실적의 달성도는 전년도 104%보다 8.5% 낮은 95.5%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만족도 성과지표 달성 현황]

구분	2015년 만족도	2016년	
		만족도	전년 대비 증감
목 표(점)	8.5	8.9	0.4
실 적(점)	8.84	8.5	△0.34
달성도(%)	104	95.5	△8.5

주: 인권교육만족도 성과지표는 2015년부터 설정함.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이는 2016년도에 인권교육의 교육횟수 및 인원이 증가하였으나 인권특강 · 방문교육에 비해 사이버교육을 더 많이 확대 · 실시하였고, 인권강사 양성과정에 중점을 둠에 따라 양적 확대에 비해 질적 제고가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교육 추진체계 변화 이후 인권교육 만족도가 낮아진 것에 대해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1-2. 인권교육전문가 및 강사 양성제도 개선 필요

가. 현 황

인권강사 양성사업은 인권교육기획 및 운영 사업의 내역사업인 인권연수과정 운영 사업의 내내역사업이다.

2016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 본부 및 4개 지역인권사무소 인권교육센터에서 인권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하여 총 1억 7,500만원을 집행하였고, 543명이 수강하였다.

[인권강사 양성교육과정 예산집행 및 수강인원 현황]

(단위: 백만원, 명)

구분	예산집행액				수강인원[1)]
	기본	전문	심화	계	
국가인권위원회 본부	49	28	15	92	235
부산 지역인권사무소	4	7	6	17	60
광주 지역인권사무소	11	8	5	24	18
대구 지역인권사무소	5	7	7	19	87
대전 지역인권사무소	10	8	5	23	56
계	79	58	38	175	543

주: 1) 과정별 중복 수료 인원 포함.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나. 분석의견

인권교육전문가 및 강사 양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인권강사양성 교육과정은 9개 분야(장애분야, 정신보건분야, 노숙인분야, 이주분야, 아동청소년분야, 영유아분야, 노인분야, 사회복지분야, 스포츠분야)와 군 인권교관 및 역량강화 교육과정으로 구분된다.

[2016년 인권강사양성 교육과정 운영 현황]

인권강사양성 분야	교육대상자
장애분야	장애분야 관련 전문가 등(장애인 시설장, 인권지킴이, 장애인단체 활동가, 장애분야 연구자 및 장애인 관련 전문가 등)
정신보건분야	정신보건 전문교육기관 인권강사, 정신보건시설 경력자, 전문교육기관으로부터 추천된 당사자 등
노숙인분야	관련 전문가 및 노숙인 관련 시설 경력자 등
이주분야	이주 분야 전문활동가, 이주관련 단체 근무 경력자
아동청소년분야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사
영유아분야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 보육지원기관 종사자 · 영유아분야 교육 · 활동 · 연구 분야 경력자
노인분야	노인관련 시설 종사자(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사분야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분야 전문활동가
스포츠분야	스포츠 관련 분야 경력자 및 스포츠분야에 이해가 있는 자
군 인권교관	군 인권교관(장교, 부사관)
역량강화 교육과정	인권강사양성 교육수료자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강사 위촉을 위한 인권강사양성 교육과정(총 8일)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강의시연 평가 등 역량평가를 거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전문강사단으로 위촉[4]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341명을 위촉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이들 위촉된 인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하는 인권감수성향상과정 · 의무교육과정 · 찾아가는 학교인권 특강 등에 강사로 배치 · 활용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인권교육전문가 및 강사 양성과정의 운영 근거로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5]를 들고 있는데, 향후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속적인 인권교육 강사 양성 및 관리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6]

4) 국가인권위원회는 최초 1년, 재심사를 통해 2년간 위촉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5)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정책교육국) ⑦ 인권교육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인권교육 전문가 및 강사 양성과정의 운영 및 관리
(대통령령 제25575호(2014.8.27)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규정은 2017년 7월 31까지 유효하였으나, 2017.7.24. 동 규정 개정으로 시한이 폐지되었음)

6) 「통일교육지원법」 제9조의2에서는 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양성에 관한 전문과정 개설 및 전문강사 자격 부여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1-3. 지역인권체험관과 지역인권교육센터의 연계 강화 필요

가. 현 황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증진을 위한 3개년 계획(2015-2017년)」에서 지역주민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접근성 강화 및 인권가치의 전국적 확산을 위하여 시민들을 대상으로 장애체험 등 인권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인권작품 기획전시회를 개최하는 지역인권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광주 · 부산 · 대구에 각각 인권체험관을 설치하였고, 2016년에는 대전인권체험관을 신설[7]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년도에 대전광역시 및 대전평생교육진흥원과의 업무협약(2016.6.30.)[8]을 통해 인권교육 콘텐츠 · 프로그램의 개발 · 보급, 인권교육과정의 공동개발과 공동운영 등을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2016년도에 설치한 대전인권체험관을 통해 경찰관 대상 인권체험 및 인권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9]

나. 분석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역인권체험관과 지역인권교육센터를 연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각 지역인권체험관을 통해 15회의 기획전시와 322회의 인권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각 지역인권사무소 내에 지역인권교육센터를 두고 있으며, 각 센터를 통해서도 605회의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

---

7) 당초에는 대전인권체험관을 광주나 부산의 경우처럼 지하철 역사를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국가인권위원회는 대전인권체험관의 설치장소를 구 충남도청 자리로 변경하였다.

8) 국가인권위원회와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의 '지역 인권문화 확산 및 인권분야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서'(2016.2.23.), 국가인권위원회와 대전광역시의 '인권증진 및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서'(2016.6.30.)

9) 경찰청은 경찰관이 인권체험관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에는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대통령령) 제2조의 '기타 교육훈련' 과정에 해당되어 교육시간만큼 상시학습교육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지역인권체험관 및 지역인권교육센터 비교]

(단위: 백만원)

구 분		지역인권체험관	지역인권교육센터
운 영		지역인권사무소	지역인권사무소
설 치		광주,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부산, 대구, 대전
소재 위치		지역인권사무소 관할지역내	지역인권사무소내
주요기능		인권교육, 기획전시	인권교육
2016년도 집행액		281	1,432
2016년도 추진실적	기획전시	15회(관람인원 7,145명)	-
	인권교육	322회(교육인원 5,717명)	605회(교육인원 18,643명)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지역인권체험관과 지역인권교육센터는 설치지역 및 운영주체가 동일하고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향후 국가인권위원회는 각 지역인권체험관의 인권교육과정과 지역인권교육센터의 인권교육과정을 연계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통한 인권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등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Ⅰ 결산 개요

1 현 황

가. 총수입·총지출 결산

2016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결산은 일반회계, 교도작업특별회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구성된다.

2016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총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2,432억 800만원(12.2%) 감소한 1조 7,533억 3,3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27억 3,500만원(0.2%)이 감소하였다.

[2016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2015 결산액(A)	2016				전년 대비 (C-A)
		예산액		결산액 (C)	추경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 산	1,665,776	1,888,761	1,888,761	1,645,784	△242,977	△19,992
기 금	90,292	107,780	107,780	107,549	△231	17,257
합계(총수입)	1,756,068	1,996,541	1,996,541	1,753,333	△243,208	△2,735

자료: 법무부

2016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총지출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1,663억 5,500만원(5.4%)이 증가한 3조 2,618억 7,5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468억 8,400만원(1.5%)이 증가하였다.

채미강 예산분석관(river@assembly.go.kr, 788-4640)

[2016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2015 결산액(A)	2016				전년 대비 (C-A)
		예산액		결산액 (C)	추경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 산	3,132,295	3,003,868	3,003,868	3,171,389	167,521	39,094
기 금	82,697	91,652	91,652	90,486	△1,166	7,789
합계(총지출)	3,214,991	3,095,520	3,095,520	3,261,875	166,355	46,884

자료: 법무부

나. 세입·세출 결산

2016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조 8,887억 6,100만원이며, 1조 6,676억 2,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조 6,457억 8,400만원을 수납하고 217억 5,4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9,000만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다.

[2016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세입 예산현액 (A)	징수 결정액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1,801,455	1,801,455	1,801,455	1,563,048	1,541,322	21,636	90	85.6
교도작업특별회계	87,306	87,306	87,306	104,580	104,462	118	0	119.6
합 계	1,888,761	1,888,761	1,888,761	1,667,628	1,645,784	21,754	90	87.1

자료: 법무부

2016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3조 3,251억 2,000만원이며, 이 중 99.3%인 3조 3,011억원을 지출하고 51억 7,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88억 4,400만원은 불용하였다.

[2016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3,046,273	3,046,273	3,236,988	3,214,856	5,176	16,957	99.3
교도작업특별회계	87,306	87,306	88,132	86,244	0	1,888	97.9
합 계	3,133,579	3,133,579	3,325,120	3,301,100	5,176	18,844	99.3

자료: 법무부

다. 기금 결산

2016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기금의 수입계획액은 1,077억 8,000만원이며, 1,076억 5,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075억 4,900만원을 수납하고 1억 500만원을 미수납하였다.

[2016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기금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수입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수납률 (B/A)
	당초	수정(A)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07,780	107,780	107,654	107,549	105	0	99.8

자료: 법무부

2016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액은 1,077억 8,000만원이며, 1,075억 4,900만원을 지출하고 11억 6,7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6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기금 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지출계획액		계획현액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당초	수정(A)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07,780	107,780	107,780	107,549	0	1,167	99.8

자료: 법무부

라. 재정구조

2016회계연도 법무부의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949억원 전출되었다.

[2016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주: 총계 결산 기준
자료: 법무부

2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관련 국회 논의사항

법무부의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국민편익증진법제정비(청년법제포럼), ② 특별감찰활동, ③ 안전비리 등 민관유착사범비리단속 사업** 등이 있다.

국민편익증진법제정비 사업은 내역사업인 '청년법제포럼'이 법제처의 국민법제관 등 타 사업과 중복되는 면이 있으므로 불필요한 중복 지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1,100만원이 감액(13억 5,000만원 → 13억 3,900만원)되었고, 특별감찰활동 사업은 특별감찰관 소속 인력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외 사례조사를 위한 국외업무여비 2,000만원 및 정책연구비 3,000만원이 감액(13억원 → 12억 5,000만원)되었다.

안전비리 등 민관유착사범비리단속 사업은 세부사업의 산출근거가 불명확한 점, 검찰의 독자적 수사 필요성이 미약한 점 등을 고려하여 10억원이 감액(96억 4,200만원 → 86억 4,200만원)되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① 성장동력확충을 위한 기업법제 선진화, ② 출입국사무소 시설운영 사업** 등이 있다.

성장동력확충을 위한 기업법제 선진화 사업은 중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대한상사중재원 및 서울국제중재센터 지원 예산 18억 9,600만원이 증액[1]되었고, 출입국사무소 시설운영 사업은 부산출입국관리소 김해출장소 신설과 관련하여 9억 3,000만원이 증액(239억 8,700만원 → 249억 1,700만원)되었다.[2]

---

1) 성장동력확충을 위한 기업법제 선진화 사업의 정부안은 12억 4,900만원이었으나, 내역사업인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 사업에서 정부안 대비 5,000만원 감액, 또다른 내역사업인 중재산업 활성화 사업에서 18억 9,600만원 증액되어 최종 예산은 30억 9,500만원으로 확정되었다.

2) 국회,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5.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심사자료(Ⅱ)」, 2015. 11.

3 2016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법무부는 ① 불법비리 근절, ② 범죄불안 해소, ③ 경제활성화 지원, ④ 글로벌 법무영역 확대 등을 통한 행복법치 구현을 2016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16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국가재정법」 제22조에 따라 예비비는 당초 예산 편성 시 예측할 수 없었으나 집행과정에서 신규 지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국가배상금 지급, 형사보상,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4개 세부사업에서 연례적으로 예비비를 신청·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그간의 집행추세를 고려하여 적정 소요를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교도소 및 치료감호소의 과밀 수용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도소의 경우 지속되는 과밀수용으로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사업에서 연례적으로 예비비를 집행하고 있으며, 2017년 4월말 기준으로 58,345명(수용정원 47,000명 대비 124.1%)이 수용되어 OECD 34개국 중 헝가리(13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용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 사업과 국민편익증진 법제정비 사업 등에서 내부 업무협의를 위한 회의장 용도로 호텔, 사무실 등 외부시설 임차료를 집행하였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지침에서 회의장은 각급 공공기관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내부 회의 용도로 외부시설을 임차하여 임차료를 과다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II 주요 현안 분석

1 2016년 예비비 집행 사업 분석

「국가재정법」 제22조[1]에 따라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2016년 법무부의 예비비 배정액은 1,855억 4,400만원, 집행액은 1,821억 7,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국가배상금 및 형사보상금 지급 소요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2016년에는 법무부 소관 6개 세부사업에서 예비비를 사용하였는데, 이 중 국가배상금 지급, 형사보상,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4개 세부사업은 본예산 부족에 따라 연례적으로 예비비를 집행하고 있다.

그 밖에, 박영수 특별검사는 2016. 11. 22.「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특별검사 활동 지원을 위한 예비비 39억 6,700만원을 배정받고 9억 6,300만원을 집행하였다. 출입국사무소 시설운영 사업은 2016년 1월 인천공항 밀입국 사건 발생 등에 따라 출입국 보안관리용역 강화, 경찰청 지문조회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예비비 45억 6,000만원을 배정받아 42억 200만원을 집행하였다.

채미강 예산분석관(river@assembly.go.kr, 788-4640)

1) 「국가재정법」 제22조(예비비) ①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2015년 및 2016년 예비비 집행액 비교]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년(A)	2016년(B)	증감(B-A)
국가배상금 지급	260,788	158,005	△102,783
형사보상	27,775	5,829	△21,946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	11,134	1,444	△9,690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3,464	11,736	8,272
출입국사무소 시설운영	0	4,202	4,202
박영수 특별검사	0	963	963
특별감찰관 운영	2,144	0	△2,144
과학수사 인프라 구축	455	0	△455
합 계	305,760	182,179	△123,581

자료: 법무부

1-1. 국가배상금 지급 및 형사보상 사업의 연례적 예비비 집행 등

가. 현 황

국가배상금 지급 사업[1]은 공무원의 불법행위나 공공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2016년 예산액은 550억원이었으나, 이·전용액 236억 1,000만원, 예비비 1,580억 500만원을 더한 예산현액 2,366억 1,500만원을 전액 집행(본예산 대비 430.2% 집행)하였다.

형사보상 사업[2]은 법원의 무죄판결 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구속 피고인·피의자에게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2016년 예산액은 250억원이었으나, 전용액 등 9억 4,000만원, 예비비 58억 2,900만원을 더한 예산현액 317억 6,900만원을 전액 집행(본예산 대비 127.1% 집행)하였다.

[국가배상금 지급 및 형사보상 사업의 최근 5년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국가배상금 지급	2012	20,000	9,835	104,234	134,069	134,053	0	16
	2013	20,000	15	41,790	61,805	61,601	0	204
	2014	23,600	49	818,414	205,063	205,062	0	1
	2015	40,000	434	260,788	301,222	301,222	0	0
	2016	55,000	23,610	158,005	236,615	236,615	0	0
형사보상	2012	7,972	6,660	38,548	53,180	53,179	0	1
	2013	11,000	0	46,672	57,672	57,672	0	0
	2014	14,000	0	74,185	88,185	88,166	0	19
	2015	20,000	5,200	27,775	52,975	52,975	0	0
	2016	25,000	940	5,829	31,769	31,769	0	0

자료: 법무부

1) 예산코드: 일반회계 1031-301

2) 예산코드: 일반회계 1337-302

나. 분석의견

첫째, 국가배상금 지급 및 형사보상 사업의 경우 연례적 예비비 사용이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예비비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들 두 사업은 매년 예비비 사용이 반복되고 있어 예측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국가재정법」 제22조에서 명시한 예비비 계상 요건인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만, 2016년에는 본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고 예비비보다 이·전용액을 적극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2016년 결산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가배상금 지급사업의 경우 타 사업으로부터 이·전용한 금액은 최근 5년간 결산내역 중 최대치이고 예비비 사용은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형사보상 사업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본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한 결과 최근 5년간 결산내역 상으로 예비비 사용액 및 초과집행액이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둘째, 법무부는 국가배상금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율을 낮추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킨 공로로 소속 직원 2명에게 예산성과금 700만원을 지급[3]하였는데, 이는 예산성과금 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예산성과금은 「국가재정법」 제49조[4] 및 「예산성과금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제도개선 등으로 지출을 절약하거나 수입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 자에게 지급한다. 이 때 '지출 절약' 또는 '수입 증대'는 제도 개선 등으로 업무성과를 동등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경비를 적게 사용하여 예산이 남는 경우나 새로운 세입원 발굴 등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국고 수입이나 국유재산이 늘어난 경우를 의미한다.[5] 이러한 요건에 해

3) 법무실 기본경비(7011-253)에서 국가배상금 지연이자 지출 절약 공로로 2명에 대하여 700만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하였다.

4) 「국가재정법」 제49조(예산성과금의 지급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절약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절약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지급, 절약된 예산의 다른 사업에의 사용 및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예산성과금 규정」 제4조(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요건)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출의 절약(이하 "지출절약"이라 한다)은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자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산성과금 심사를 요청하면,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의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과금을 지급하게 된다.

법무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2015. 9. 25.)하여 배상 지연 시 법정이율을 종전 연 20%에서 15%로 낮추었고, 이에 따라 국가배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절감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지연이자율을 낮추는 것은 예산 절약을 도모하는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라기보다는 담당 공무원이 통상적인 업무 추진 중에 저금리 기조 등을 고려하여 응당 수행하여야 할 업무영역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해당 개정령안의 제안이유에도 은행의 평균 연체금리 등 최근의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법정이율을 낮추려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6]

또한, 국가배상금을 늦게 지급받는 국민 입장에서는 지연이자율 인하에 따라 종전보다 손해를 보게 된 것이므로 제도 개선으로 예산을 절감하며 이전과 동등 이상의 업무 성과를 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해당 건에 대한 포상을 신청한 법무부 및 이를 선정한 기획재정부(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향후 예산성과금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하게 된 경우로 한다.

1. 정원감축,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 개선 등으로 업무성과를 종전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경비를 적게 사용하여 예산이 남게 된 경우
2. 예산편성과정에서 절약예상액을 미리 감액 편성하거나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는 수입의 증대(이하 "수입증대"라 한다)는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 개선 등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 한다.

1. 국고의 수입(국채발행수입금과 차입금을 제외한 국세·관세 및 세외수입 등 일체의 세입재원을 말한다)이 늘어난 경우
2.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이 늘어난 경우

6) 동 개정령안의 제안이유에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나 심판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평균 연체금리 등 최근의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현행 연 100분의 20에서 연 100분의 15로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1-2.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 사업의 집행 투명성 제고 필요 등

가. 현 황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 사업[1]은 론스타의 투자자-국가 소송(ISD)[2] 제소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자문 및 중재비용 등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이다. 동 사업의 2016년 예산액은 34억 3,800만원이었으나 예비비 14억 4,400만원을 더한 예산현액 48억 8,200만원 중 48억 8,0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을 불용하였다.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		3,438	0	1,444	4,882	4,880	0	2
210-01	일반수용비	3,381	0	1,444	4,825	4,825	0	0
210-07	임차료	4	0	0	4	3	0	1
220-02	국외업무여비	45	0	0	45	45	0	0
240-01	사업추진비	8	0	0	8	7	0	1

자료: 법무부

나. 분석의견

첫째, 법무부가 타 부처 및 로펌 관계자 등과의 내부 회의를 위하여 호텔 등 요식업장에서 임차료를 집행하는 것은 회의의 성격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법무부는 로펌 관계자 등과의 내부 업무협의를 위하여 반포원, 엘타워,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일당 약 80~110만원에 달하는 임차료를 3차례 집행[3]하였다. 법무부는 2015년에도

1) 예산코드: 일반회계 1032-306

2)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란, 투자유치국이 투자협정을 위반하여 외국인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협정에 규정된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직접 제소하여 국제중재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3) 2016. 6. 30. 론스타 분쟁 실무자회의-엘타워(양재)(1,104,400원)
2016. 11. 14. 론스타 관계부처 TF 과장급 회의-㈜반포원(790,000원)
2016. 12. 27. 국제투자분쟁 외부전문가 회의-더팔래스서울호텔(869,000원)

동 사업에서 관계부처와의 내부 회의 목적으로 한옥호텔 등을 2차례 임차하여 약 380만원을 집행한 바 있다.[4)]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201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5)]은 행사장 및 회의장 임차의 경우 공공기관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행사장의 경우에도 호텔 등의 임차는 지양하도록 하고 있다. 동 사업에서 진행한 회의의 성격은 론스타 대응과 관련한 관계부처, 로펌 등과의 내부 회의 성격이었으므로 이를 위하여 호텔 등에서 임차료를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차료(210-07목)를 호텔 등 요식업장에서 집행할 경우에는 장소에 대한 임차료에 식대 등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집행도 가능할 수 있어 바람직한 집행 사례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에는 본부 및 소속기관의 회의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임차료를 절감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법무부는 로펌과의 계약서 및 비용청구서의 외부 공개가 진행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아 해당 내역을 제출·공개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예비비를 2014년 46억 8,400만원, 2015년 111억 3,400만원, 2016년 14억 4,400만원씩 3년 연속 신청하였고, 해당 금액 대부분을 국내·외 로펌 수임료 등으로 집행하였다. 그러나 집행액의 산출근거인 수임료 단가 및 과업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아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로펌의 비용 청구와 법무부의 지출 검토 과정에서 예산 집행상 비효율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는 기준이 부재하여 국회의 예·결산 심사를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동 사안은 향후 투자자-국가 소송의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므로 경과 및 집행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 관리와 함께 중재판정 종료 즉시 세부내용에 대한 국회 제출 및 보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4) 2015. 11. 2. 론스타 중재소송 관련 관계부처 및 국내로펌 전략회의-엘타워(양재)(2,393,600원)
2015. 12. 28. 론스타 3차 심리기일 대비 관계부처 회의-락고재(1,400,000원)

5) 기획재정부, 「201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15. 4., p.178.

[론스타 ICSID 소송 경과]

○ 2012. 5. 22. 론스타, 중재의향서(Memorandum) 송부
○ 2012. 5.~6. 관계부처 T/F 및 분쟁대응단 구성
※ 총리실(現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6개 기관 참여
○ 2012. 6.~8. 정부 대리 국내·외 로펌 선정
→ 법무법인 태평양, 아놀드 앤 포터(Arnold & Porter)
○ 2012. 11. 21. 론스타, 국제투자분쟁센터(ICSID: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에 중재 요청
- 금융위원회의 부당한 외환은행 매각승인 지연 및 국세청의 자의적 과세처분으로 약 5조 원(약 46억 7,950만 달러, 환율 1달러=1,100원 적용)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주장
○ 2013. 5. 10. 중재재판부 구성 완료
○ 2013. 10. 15. / 2014. 3. 21. 론스타 및 한측 1차 서면 제출
○ 2014. 4.~8. 증거개시절차
○ 2014. 10. 1. / 2015. 1. 23. 론스타 및 한측 2차 서면 제출
○ 2015. 3. 31. 론스타 관할 추가서면 제출
○ 2015. 5. 15.~5. 22. 1차 심리기일 진행(워싱턴)
○ 2015. 6. 29.~7. 7. 2차 심리기일 진행(워싱턴)
○ 2016. 1. 5.~1. 7. 3차 심리기일 진행(헤이그)
○ 2016. 6. 2.~6. 3. 4차 심리기일 진행(헤이그)
○ 향후 양측에 대한 중재재판부의 추가 질의 시, 이에 대한 서면 답변 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
- 통상적으로 심리 후 최종 판정 시까지 약 6개월~2년 소요

자료: 법무부

1-3. 출입국사무소 시설운영 사업의 예비비 집행상 문제점

가. 현 황

출입국사무소 시설운영 사업[1]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기관의 청사 임차료, 공공요금, 유지보수비용 등을 지원하여 원활한 이민행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2016년 예산액은 249억 1,700만원이었으나, 전용액 5억 6,400만원, 예비비 45억 6,000만원을 더한 예산현액 300억 4,100만원 중 295억 8,7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5,400만원을 불용하였다.

[출입국사무소 시설운영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출입국사무소 시설운영	24,917	0	564	4,560	30,041	29,587	0	454

자료: 법무부

나. 분석의견

첫째, 법무부는 예비비로 기본조사설계비(420-01목)를 신청하여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과 관련된 변압시설 등 시설설비 구축에 1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동 비목은 사업 기본계획 수립, 공사 기본설계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집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비목 신청 및 집행상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016년 1월 인천공항 밀입국 사건[2] 등이 발생하자 예비비 45억 6,000만원을 신청하여 자동출입국심사대 보안관리요원 및 밀출입국 차단 보안전담인력 배치,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3] 및 경찰청 지문조회시스템[4] 구축 등에 42억 200만원을 집행하였다.

---

1) 예산코드: 일반회계 1232-300

2) 출국심사장을 통한 중국인 밀입국(2016. 1. 21.), 베트남인 자동출입국심사대 강제개방 후 밀입국(2016. 1. 29.), 화장실내 폭발의심물체 설치(2016. 1. 29.)

3) 테러분자, 입국금지자 등 위해외국인의 항공기 탑승을 사전 차단하는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 개정(2016. 3.)

4) 공항보안 강화에 따른 출입국심사장 혼잡도 심화 및 대기시간 지연 등 문제점을 해소하고 자동출입국심

이 중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예비비로 업무용역비(260-01목), 자산취득비(430-01목) 및 기본조사설계비(420-01목)[5]를 신청하였는데, 기본조사설계비로 실제 집행한 내역은 공항의 변압시설 등 시설설비 구축이었으므로 시설비(420-03목)[6]로 신청·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가재정법」 제29조 및 제44조에 따른 예산안 편성지침 및 예산 집행지침은 세출예산을 20여개의 비목과 100여개의 세목으로 구분하여 각 비목별로 구체적인 용도와 사용범위를 정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실제 지출내역에 부합하는 비목을 신청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법무부는 예비비로 당초 신청하지 않았던 비목인 공공요금 645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예비비 신청 목적과 다른 집행으로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한다.[7]

공공요금 및 제세(210-02목)는 당초 예비비 신청항목에 없었던 비목이었으나, 집행과정에서 실무자의 착오로 예비비 배정액에서 645만원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예비비는 국회가 승인한 본예산 외로 특수하게 집행하는 경비인 만큼 집행 시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사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경찰청이 보유한 지문정보를 활용하여 사전등록절차 없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개정(2016. 3.)

5) 기본조사설계비: 예비설계 및 기본공사비 산정, 공사규모 등 기본적 사항의 설계에 소요되는 경비(기획재정부, 「201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15. 4., p.219)

6) 시설비: 건물, 공작물, 구축물 및 부대시설의 건축경비(위의 책, p.223)

7)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출입국사무소 시설운영 사업의 예비비 집행내역]

(단위: 천원)

비목	내 역	예비비 배정액	집행액	잔액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김해공항 시설사용료(냉난방비)	0	6,450	△6,450
위탁사업비 (210-15)	자동출입국심사대 및 심사장 보안관리 용역 위탁운영	855,414	646,950	208,464
업무용역비 (260-01)	탑승자확인시스템 및 경찰청지문확인 시스템 구축(S/W 개발)	620,000	620,000	0
기본조사설계비 (420-01)	탑승자확인시스템 구축 (변압시설 등 구축)	160,000	160,000	0
자산취득비 (430-01)	탑승자확인시스템 및 경찰청지문확인 시스템 구축(S/W 및 H/W 취득)	2,925,000	2,769,062	155,938
	합 계	4,560,414	4,202,462	357,952

자료: 법무부

셋째, 법무부는 당초 편성한 자동출입국심사대 보안관리용역 위탁사업비(210-15목) 4억 3,400만원에 예비비 8억 5,500만원을 추가 배정받아 인천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보안관리용역 규모를 확대하는 등 본예산 대비 약 2.5배인 10억 7,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용역계약 시 시중노임단가를 준수하지 못하였다.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청소, 경비 등 청사관리용역 근로자의 노임단가로 최저임금이 아닌 단순노무종사원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해공항 및 제주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당초 보안관리용역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가, 인천공항 밀입국사건 등을 계기로 연도 중 예비비를 배정받아 보안관리용역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김해공항 및 제주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동 용역 계약공고를 위한 예정가격 산정 시 예산 부족으로 2016년 시중노임단가(8,210원)보다 낮은 8,018원, 8,209원을 적용[8]하였고, 낙찰률까지 적용한 실제 지급단가는 7,241원, 7,170원으로 시중노임단가의 88.2%, 87.3% 정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법무부는 향후 용역계약 시 시중노임단가를 준수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8)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경우 용역계약을 위한 예가 산정 시 9,650원을 적용하여 2016년 시중노임단가(8,210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공항 보안관리용역 계약내역]

연번	구분		예가산정 시 적용노임단가 (시급, 원)	총 계약액 (천원)	인원 (명)	지급단가 (시급, 원)	시중노임 단가 대비 지급률(%)
1	인천	자동출입국심사대 보안관리요원	(수정계약 전) 9,650	422,931	19	8,280	100.8
			(수정계약 후) 9,650	590,528	27	8,280	100.8
2		밀입국차단 보안관리요원	9,650	360,078	27	8,260	100.6
3	김해	자동출입국심사대 · 밀입국차단 보안관리요원	8,018	138,599	12	7,241	88.2
4	제주	밀입국차단 보안관리요원	8,209	48,138	4	7,170	87.3

자료: 법무부

1-4.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사업의 연례적 초과집행 개선 필요

가. 현 황

법무부는 교도소 수용자의 급식, 피복, 의료비 등 수용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사업[1]을 실시하고 있다. 2016년 동 사업 예산액은 1,692억 2,900만원이었으나 이·전용액 122억 5,500만원 및 예비비 117억 3,900만원을 더한 예산현액 1,932억 2,300만원 중 1,932억 1,600만원을 집행하고 7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5~2016년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B)	불용액	집행률 (B/A)
2015년	160,747	21,752	3,464	185,963	185,934	29	115.7
2016년	169,229	12,255	11,739	193,223	193,216	7	114.2

주: 2015년까지는 교정기관 공공요금 사업(1531-301)과 수용관리 사업(1532-300)으로 분리되었으나, 2016년부터 두 사업을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사업(1532-300)으로 통합
자료: 법무부

나. 분석의견

첫째, 법무부는 교도소 수용인원 증가에 따라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예비비를 신청하였는데, 수용인원 추세 등을 볼 때 이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지출이므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재정법」 제22조[2]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비비는 헌법상 '예산의 사전의결원칙'에 대한 예외이므로 예산의 편성이나 심의 당시 예측할 수 없었고(예측불가능성),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이나 심의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시간이 긴박하며(시급성), 확정된

1) 예산코드: 일반회계 1532-300

2) 「국가재정법」 제22조(예비비) ①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예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불가피한 초과지출에 충당(불가피성)하기 위한 재원으로서, 이미 확보된 예산을 활용한 후 부족분에 대하여 사용(보충성)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2016년 예산안 요구 시점인 2015년 당시 교정시설의 평균 수용인원이 53,000명을 상회하였는데도 예산편성 기준인원을 49,500명으로 하여 본예산을 편성[3]하였으므로, 예비비 신청요건인 '예측불가능성'을 위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에는 수용인원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을 통해 본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법무부는 수용인원 증가 및 교도소 과밀수용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

법무부가 동 사업에서 2년 연속 예비비를 신청하여 집행한 것은 예산편성 기준인원 대비 실제 수용인원이 과다하였기 때문이다. 2016년 말 교도소의 연평균 수용인원은 전년(53,892명) 대비 2,603명(4.8%) 증가한 56,495명으로, 2016년 예산편성 기준인원 49,500명 대비 14.1% 초과, 교정시설 수용정원 46,950명 대비 20.3% 초과한 것이다.

교도소 과밀수용은 2017년 현재 더욱 심화되어 정원 대비 24.1%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OECD 34개국 가운데 2번째로 높은 수치이다.[4] 2013년 이후 수용인원은 연평균 약 2,500명씩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5년 후 수용률은 15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형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교정의 최종 목적인 수형자의 재사회화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다. 그러나 과밀수용으로 인하여 개별적인 처우를 위한 공간 및 인력이 부족하게 되면 수용자 간 악풍 감염우려가 있고 적극적인 재사회화보다는 구금 위주의 소극적인 교정행정이 행하여질 가능성이 높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도 과밀수용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

3) 최근 3년간 교정시설 연평균 수용인원 및 예산편성인원과의 격차는 다음과 같다.

(단위: 명)

연도	연평균인원(A)	예산편성인원(B)	격차(A-B)	수용정원
2014	50,128	48,000	2,128	46,780
2015	53,892	48,000	5,892	46,950
2016	56,495	49,500	6,995	

자료: 법무부

4) 2017년 4월 말 기준으로 수용정원 47,000명 대비 수용현원 58,345명(수용정원 대비 124.1%)으로, 헝가리(13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용률을 보이고 있다.

결정(헌재 2016. 12. 29. 2013헌마142 결정,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이 내려졌으므로, 법무부는 수용인원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교정시설 확충 등을 통하여 재소자들의 과밀수용 문제를 개선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최근 5년간 교도소 수용현황]

(단위: 명,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4.
수용정원	45,990	46,780	46,950	46,950	47,000
일평균 수용인원	47,924	50,128	53,892	56,495	57,865
(전년대비)	(2,436)	(2,204)	(3,764)	(2,603)	(1,370)
수용률	104.2	107.2	114.8	120.3	123.1

자료: 법무부

셋째, 법무부는 공공요금(210-02목)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타 프로그램으로부터 122억 1,500만원을 이용한 후, 이 중 10억 5,000만원을 다시 급량비(320-06목)로 전용하고 1억 7,600만원을 일반수용비(210-01목)로 세목조정하여 집행하였다.

이용(移用)[5] 및 전용(轉用)[6]은 신축적인 재정운용 필요성에 따라 예외적으로 예산을 변경하는 제도이므로 최소한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향후에는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부족분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용 등을 통해 증액시킨 비목의 예산을 다른 비목으로 전환하여 집행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5) 예산의 각 장(분야), 관(부문), 항(프로그램) 등 입법과목 사이에 상호 융통하는 것으로서 「국가재정법」 제47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6) 예산의 각 세항(단위사업), 목(비목) 등 행정과목 사이에 상호 융통하는 것으로서 「국가재정법」 제46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2 법무부 특수활동비의 통제 강화 필요

가. 현 황

특수활동비(230목)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주로 정보활동 수행자의 교통비 · 식비 · 숙박비, 정보제공자에 대한 사례금, 기타 국가기밀의 보안 유지와 사업내용이 노출될 경우 정책수행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대하여 편성 · 집행된다.

법무부는 2016년에 21개 세부사업에 편성된 특수활동비 195억 3,800만원 중 192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다.

[2016 법무부 세부사업별 특수활동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예산코드)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1	국가송무수행및공익법무관운영(1031-300)	61	61	0	0
2	국제거래및국제통상법률지원(1032-300)	15	15	0	0
3	첨단범죄및디지털수사(정보화)(1334-501)	270	270	0	0
4	검찰수사지원(1335-300)	1,090	1,090	0	0
5	수사일반(1335-301)	11,313	11,313	0	0
6	공안수사(1335-302)	788	788	0	0
7	국민생활침해사범단속(1335-303)	3,245	3,245	0	0
8	마약수사(1335-304)	609	609	0	0
9	안전비리 등 민관유착비리 사범 단속 (1335-306)	388	388	0	0
10	공소유지(1337-300)	18	18	0	0
11	박영수특별검사(1339-305)	443	150	293	0
12	소년원생수용(1632-300)	138	138	0	0
13	치료감호자수용관리(1634-300)	6	6	0	0
14	보호관찰활동(1635-300)	153	153	0	0
15	기관운영기본경비(7011-250)	215	215	0	0
16	법무실기본경비(7011-253)	4	4	0	0
17	외국인본부기본경비(7011-255)	191	191	0	0
18	교정본부기본경비(7011-257)	263	263	0	0
19	범죄예방정책국기본경비(7011-261)	77	77	0	0
20	인권국기본경비(7011-263)	117	117	0	0
21	출입국관리사무소운영기본경비(7018-250)	134	134	0	0
	계	19,538	19,245	293	0

주: 정보사업 및 특별감찰관 제외
자료: 법무부

채미강 예산분석관(river@assembly.go.kr, 788-4640)

나. 분석의견

특수활동비 예산은 구체적인 산출근거 없이 총액으로 편성되어 국회가 해당 금액의 적정성을 심의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사후적인 통제에도 한계가 있다.

「201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의 집행에 대해서는 당초 편성한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특수활동을 실제 수행하는 사람에게 필요 시기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만이 존재한다.[1] 또한, 특수활동비는 별도의 증빙 없이 현금 집행이 가능하여 집행상 재량이 크므로 본래 목적인 수사 등에 집행하였는지 국회의 결산 심사과정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법무부 각 실·국·본부의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등과 같이 기밀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나 업무추진비 등 타 비목으로 전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특수활동비를 편성·집행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1) 기획재정부, 「201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16, p.163.

3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업법제 선진화 사업의 내역사업 정비 필요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업법제 선진화 사업[1]은 예산액 30억 9,500만원 중 86.9%를 집행하였다. 동 사업은 중재산업 활성화, 공익신탁, 선진법제포럼,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 등 다수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업법제 선진화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업법제 선진화	3,095	0	△19	3,076	2,690	87	299
중재산업 활성화	1,896	0	0	1,896	1,608	87	201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	245	0	△4	241	157	0	84

자료: 법무부

3-1. 서울국제중재센터 보조재원 이원화 개선 필요

가. 현 황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업법제 선진화 사업의 내역사업 중 하나인 중재산업 활성화 사업은 정부가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국회 심사 단계에서 18억 9,600만원이 신규 반영되었다. 이는 대한상사중재원[2] 보조금 13억 4,000만원, 서울국제중재센터[3] 보조금 3억 5,600만원, 중재산업 활성화 관련 업무용역비 2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채미강 예산분석관(river@assembly.go.kr, 788-4640)

1) 예산코드: 일반회계 1033-304

2) 비영리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법」에 근거하여 1966년 3월 설립된 국내 유일의 상설중재기관으로서,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한 분쟁을 중재, 조정, 알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3) 공익사단법인 서울국제중재센터(IDRC)는 2013년 5월 법무부와 서울시의 지원 하에 설립된 동북아시아 지역 최초의 국제중재 전문시설로서, 중재시설을 제공하고 국내외 중재기관을 입주시켜 수익을 창출한다.

나. 분석의견

서울국제중재센터의 경우 중재 교육, 홍보 등 유사한 활동에 대하여 법무부 일반회계(2016년 예산액 기준 3억 5,600만원)와 대법원 사법서비스진흥기금(2016년 계획액 기준 5,000만원)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서울국제중재센터는 서울을 동북아 지역의 중재허브로 도약시킬 것을 목표로 설립된 중재전문 심리시설로서, 국내 및 해외중재기관의 상사중재사건 및 중재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임의중재, 투자중재 사건의 심리를 유치하고자 교육 및 홍보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동 센터는 법무부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업법제 선진화(중재산업 활성화) 사업 및 대법원의 조정제도 지원(서울국제중재센터 육성지원) 양 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320-01목)를 받고 있으며, 센터가 법무부 및 대법원(법원행정처)에 각각 제출한 '2016년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살펴보면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4]이 동일하다.

실제 보조사업의 수행실적을 살펴보면 법무부 일반회계 보조금으로 스포츠중재재판소와 스포츠중재세미나를 개최한 것, 대법원 사법서비스진흥기금 보조금으로 법원의 국제중재판례 영문번역사업을 수행한 것 외에는 중재인 교육, 세미나, 설명회 등 대부분 유사한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처럼 교육, 홍보 등 센터의 유사 사업에 대하여 법무부 일반회계와 대법원 기금이 이중으로 지원될 필요가 없으므로 사업 내용 및 재원의 정비가 요구된다.

---

4) 목적: 국제중재 활성화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중재심리를 서울에 유치하여 법률서비스업 무역수지 적자 해소에 기여
내용: 서울이 중재지로서 갖는 장점, 효과적인 분쟁해결 방안으로서의 중재 및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을 대내외에 알리는 분야별 홍보활동, 국내 국제중재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양성사업 및 연구용역 사업 수행

[서울국제중재센터 보조금 집행계획 및 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법무부(일반회계)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업법제 선진화(1033-304) -중재산업 활성화		대법원(사법서비스진흥기금) 조정제도 지원(1161-302) -서울국제중재센터 육성지원	
	계획	실적	계획	실적
행사 및 교육비	261	174	30	30
연구용역비	0	0	20	20
홍보매체 제작비, 광고비	95	81	0	0
계	356	255	50	50

자료: 법무부, 법원행정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2.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 사업의 별도 운영 재검토 필요

가. 현 황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업법제 선진화 사업의 2016년 신규 내역사업인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 사업은 2016년 예산액 2억 4,500만원 중 1억 5,700만원을 집행하였고 8,400만원을 불용하였다.

동 사업은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법무담당관(공익법무관)을 파견하여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1벤처 1자문변호사' 제도를 통해 창업벤처기업에 법률자문 등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 사업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내역	집행액
자문변호사 소송비용 등 지원(총 77건)	126
연구보고서 발간 등	16
법무담당관 실무교육 강사료	5
특근매식비	5
국내여비	6
합 계	157

자료: 법무부

나. 분석의견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 사업은 예산액 2억 4,500만원 중 1억 5,700만원만 집행하는 등 집행률(64%)이 저조하며, 기존부터 실시해오던 9988 중소기업 법률상담 사업과 동 사업을 별도로 운영할 실익이 있는지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는 기존부터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업법제 선진화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9988 중소기업 법률상담 사업을 수행하며 소속 공익법무관의 전화상담을 실시하였고, 외부 변호사 자문료 등 추가 소요 예산은 중소기업청 사업[1] 예산 일부(최대 1억원)를 지원

1) 중소기업청의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예산코드: 일반회계 5132-305) 사업 예산액은 2016년 기준으로 65억

받는 형태로 집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창업벤처기업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하였다. 그러나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창업벤처기업이 곧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 기업에 대한 법률서비스 비용을 중소기업청 소관 예산으로 집행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2] 따라서 이처럼 서비스 지원대상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 대상을 구분하여 내역사업을 분리 운영할 실익이 있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9988 중소기업 법률상담 사업과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 사업 비교]

내역사업명	9988 중소기업 법률상담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
최초 실시연도	2009년	2016년
법률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기업, 소기업, 벤처기업, 1인 창조기업
공익법무관 배치인원	7명(2016. 1. 1. ~) 8명(2016. 8. 1. ~) 7명(2017. 4. 1. ~)	17명(센터당 1명)
예산액	중소기업청의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현장클리닉 지원) 사업 예산으로 집행(최대 1억원)	2억 4,500만원
지원실적	2014년 77건 2015년 80건 2016년 71건	77건

자료: 법무부

7,900만원이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현장클리닉 사업은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에 출연금 13억 3,000만원을 교부하여 집행하며,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을 통해 개별 기업이 현장에서 직면한 과제의 해결을 돕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 법무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 사업의 집행이 저조한 사유에 대하여 스타트업 기업의 법률지원 수요를 파악하고, 중소기업청 소관 사업인 비즈니스지원단(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현장클리닉) 예산을 먼저 사용한 후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 사업 예산을 집행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Ⅲ 개별 사업 분석

1 검찰청 자료 보안 강화를 위한 컴퓨터 망(인터넷망/업무망) 분리 실적 저조

가. 현 황

법무부는 2016년 검찰업무 정보화 사업[1]에서 예산액 298억 900만원 중 293억 6,100만원(98.5%)를 집행하였고, 이 중 31억 2,757만원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등 6개 청의 망분리 사업에 집행하였다.

망분리 사업[2]은 외부의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중요자료 유출을 방지하고 내부 정보자원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컴퓨터의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08년 5월 국가정보원, 행정자치부 및 정보화진흥원의 「국가기관 망분리 구축가이드」에 따라 전 중앙행정부처를 대상으로 시작되었고, 2008년 8월 행정자치부의 전자정부 지원사업 예산 279억원 중 30억원을 법무부 예산으로 확보하여 법무부 본부 및 대검찰청의 망분리를 완료하였다.

[검찰업무 정보화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검찰업무 정보화	29,809	29,809	0	0	29,809	29,361	0	448

자료: 법무부

채미강 예산분석관(river@assembly.go.kr, 788-4640)

1) 예산코드: 일반회계 1334-500

2) 망분리는 주요 정보가 담긴 업무망과 외부 연결된 인터넷망을 분리해 사이버 공격이나 자료 유출을 막는 작업으로서, 업무망용 PC, 인터넷망용 PC를 별도로 마련해 망분리 환경을 구축하는 '물리적 망분리'와 단일 PC에서 가상화 기술 등 소프트웨어(SW)로 망을 분리하는 '논리적 망분리'로 구분된다.

나. 분석의견

검찰청의 업무 특성상 수사자료 등 중요 자료에 대한 보안성 확보가 반드시 요구되나, 전국 65개 검찰청 중 8개 검찰청(12%)에 대해서만 망분리 사업이 완료되는 등 망분리 실적이 극히 저조하다.

법무부는 2008년 법무부 본부, 2009년 대검찰청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망분리만 추진한 후 예산 미확보로 한동안 망분리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가, 2016년에야 다시 예산을 확보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등 6개청을 대상으로 망분리 사업을 실시하였다.

국가정보원의 망분리 추진계획 및 행정자치부의 '국가기관 업무망 · 인터넷망 분리 사업'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본부 및 주요 소속기관은 2007~2010년에 이미 망분리를 완료하였다. 당시 사업계획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2008년 망분리 사업대상으로 선정되었고, 그 외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 소속기관은 취급 정보의 중요도, 구축비용 등을 고려하여 각 기관 자체적으로 망분리를 추진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법무부는 소속기관[3]이 많다는 이유로 망분리를 위한 적극적인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을 해태한 측면이 있다. 향후에는 검찰이 취급하는 공안, 수사 관련 자료 등 정보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망분리를 조속히 완료하여야 할 것이다.

[검찰청 망분리 추진경과]

연도	사업대상(예산액 기준)
2009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망분리 완료(2개청, 30억원)
2010~2015	미추진
2016	서울동부/대전고 · 지검/홍성지청/공주지청/논산지청 망분리 완료 (6개청, 32억원)
2017	서울남부지검 등 망분리 예정(10개청, 43억원)

자료: 법무부

3) 검찰청 65곳, 교정청 · 교도소 56곳, 보호관찰소 63곳, 소년원 · 치료감호소 29곳, 출입국관리사무소 46곳, 법무연수원 2곳, 북한인권기록보존소 1곳(2017. 3. 1. 기준)

2 외부 회의장 임차료 절감 필요

가. 현 황

국민편익증진 법제정비 사업[1]은 예산액 13억 3,900만원 중 98.3%을 집행하였다. 법무부는 동 사업 중 임차료(210-07목) 예산액 9,600만원 중 2,100만원을 타 사업 등으로 전용(감)하였고, 나머지 예산현액 7,500만원 중 7,100만원을 집행하였다.

[국민편익증진 법제정비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국민편익증진 법제정비	1,339	1,339	0	△15	1,324	1,316	0	9
임차료	96	96	0	△21	75	71	0	4

자료: 법무부

나. 분석의견

법무부는 민법개정위원회 등 법무부 소관 법령의 제·개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려는 목적으로 서울 서초구 소재 건물(오퓨런스)을 연중 상시 대관하며 2016년 2월부터 매월 574만 7,500원씩 총 6,322만원을 지출하였다.

법무부는 집합건물법 개정위원회,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T/F, 채권추심법 개정 T/F, 친생자추정 규정 개정 T/F,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 알기 쉬운 민법 개정 T/F, 분쟁조정위원회 관련 T/F, 후견제도 활성화 T/F 등의 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 서울 서초구 소재의 건물 일부를 상시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이들 위원회 등의 주요 목적은 법무부 소관 법령의 제·개정 논의를 위한 것으로서, 외부위원은 대부분 교수, 변호사, 검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연간 공식적인 위원회 및 T/F 회의 개최횟수가 45회에 달하

채미강 예산분석관(river@assembly.go.kr, 788-4640)

1) 예산코드: 일반회계 1033-300

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위한 회의실 사용 등까지 포함하면 연간 100회 가까이 사용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내부 법령 제·개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면서 외부 사무실을 상시 임차할 필요성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1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도 회의장 임차는 각급 공공기관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2], 법무부의 경우 과천정부청사의 독립된 1개 동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본부 내 회의장을 활용할 수 있고 각급 검찰청 등 소속기관 회의장을 활용할 여력 또한 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에는 본부 및 소속기관 회의장을 최대한 활용하고 임차료를 낭비 지출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기획재정부, 「201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15. 4., p.178.

3 형사법 정비 사업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가. 현 황

형사법 정비 사업[1]은 형법, 형사소송법 및 각종 특별법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다. 동 사업은 대부분 회의자료 인쇄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210-01목), 연구용역 등을 발주하는 업무용역비(260-01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6년 예산액은 4억 7,200만원으로 국내여비 및 업무용역비 불용액 3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4억 6,900만원(99.3%)이 집행되었다.

[형사법 정비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형사법 정비	472	472	0	0	472	469	0	3

자료: 법무부

나. 분석의견

법무부는 형사법 정비 사업의 일반수용비로 신임 검사의 검사선서패 제작 비용 850만 2,000원을 집행하는 등 예산을 당초 편성된 목적 외로 사용하여 「국가재정법」 제45조[2]를 위반하였다.

법무부는 2016년 10월 11일 형사법 정비 사업 일반수용비 예산으로 '검사선서패 제작 비용' 850만 2,000원을 집행하였다. 동 선서패는 「검사 선서에 관한 규정」에 기재된 검사 선서문을 새긴 것으로서, 법무부는 2016년 신규 임용된 검사 총 109명에게 해당 패를 지급하였다.

채미강 예산분석관(river@assembly.go.kr, 788-4640)

1) 예산코드: 일반회계 1338-300

2)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이러한 지출은 검찰국 기본경비[3] 등으로 집행하여야 할 성격이고, 사업 목적상 전혀 관련이 없는 형사법 정비 예산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전용, 내역변경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검찰국 운영에 필요한 각종 사무용품·소모품 구입, 자료 제작, 위원회 위원 수당, 업무용 택시 이용료 등에 사용

4 법무연수원의 특근매식비 연말 집중 집행 개선 필요

가. 현 황

법무부 법무연수원은 법무연수원 기본경비(총액)[1] 및 법무·검찰 공무원 등 교육운영 및 개선 사업[2]에 편성된 특근매식비 6,2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특근매식비(210-05목)는 정규 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식비를 의미한다. 기획재정부의 「201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근매식비는 1인 1식 기준 6,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

[법무연수원 특근매식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법무연수원 기본경비(총액)	883	883	0	△6	877	838	0	38
특근매식비	43	43	0	0	43	43	0	0
법무·검찰 공무원 등 교육운영 및 개선	1,488	1,488	0	10	1,498	1,464	0	34
특근매식비	19	19	0	0	19	19	0	0

자료: 법무부

나. 분석의견

법무연수원(용인, 진천)의 특근매식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집행액 62,727,270원의 51.6%인 32,346,630원이 11월 및 12월에 집중적으로 집행되었다.

특히 특근매식비가 편성된 두 개의 세부사업 중 '법무·검찰 공무원 등 교육운영 및

채미강 예산분석관(river@assembly.go.kr, 788-4640)

1) 예산코드: 일반회계 7018-204

2) 예산코드: 일반회계 5131-301

개선 사업'의 경우 11월 중순까지 특근매식비를 전혀 집행하지 않다가 11월 말과 12월에 19,255,430원 전액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무연수원의 교육은 연중 실시되므로 특근이 연말에 집중될 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향후에는 특근매식비 집행이 연말 불용 방지책으로 하반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집행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5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 재원 정비 필요

가. 현 황

법무부는 경제적 어려움 및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을 함으로써 법률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법률구조 사업[1]을 추진하고 있다.

2016년 동 사업 예산은 455억 6,5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보조금 433억 4,300만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보조금 15억 3,100만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보조금 6억 9,1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률구조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법률구조	45,565	45,565	0	0	45,565	45,565	0	0
대한법률구조공단	43,343	43,343	0	0	43,343	43,343	0	0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531	1,531	0	0	1,531	1,531	0	0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691	691	0	0	691	691	0	0

자료: 법무부

이 중 법무부의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 보조금은 공단 운영을 위한 경상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공단의 법률구조는 「법률구조법」 제7조에 따라 소송비용 등을 수익자(의뢰자)가 부담(유료 법률구조)한다. 이 경우 수익자는 '소송비용(실비)'과 '변호사 보수(수수료)[2]'를 소송 종료 후 후불로 부담한다.

다만, 한부모가족 등 일부 지원대상자의 경우 해당 정책대상을 관할하는 여성가족부

채미강 예산분석관(river@assembly.go.kr, 788-4640)

1) 예산코드: 일반회계 1131-300

2) 공단의 변호사 보수는 일반 법률시장의 1/10, 대법원규칙의 4/10 수준이다.

등이 공단과 협약하여 당사자가 공단에 납부해야 하는 실비 및 수수료를 대납(무료 법률구조)하고 있다.

나. 분석의견

공단의 무료 법률구조 지원 재원이 각 정책대상을 관할하는 '개별 부처의 일반회계 예산' 및 '대법원 사법서비스진흥기금'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과거 대법원은 공탁금관리위원회를 통하여 법원이 은행에 보관하는 공탁금[3]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정부재정이 아닌 세입세출 외의 형태로 운영하면서 해당 재원으로 공단 등에 대한 법률구조 지원 등을 수행하여 왔다.[4] 그러나 동 재원을 국가재정으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국회 등의 지적이 계속되자, 「공탁법」 및 「국가재정법」 개정(2015. 12. 3.)을 통해 2016년부터 공탁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이 신규 설치[5]되었다. 그러나 기금 운용규모가 크지 않아 기존에 실시하던 무료 법률구조 지원을 전부 기금에서 감당하지 못하고, 일부는 개별 부처의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개편하였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한부모가족), 보건복지부(장애인), 국가보훈처(보훈대상자), 법무부(생명 · 신체범죄 피해자)는 각 부처 소관 예산 및 기금으로 해당 대상에 대한 법률구조 실비 및 수수료를 대납하기로 하였고, 개인회생파산신청자, 가족관계미등록자, 소년소녀가장, 보호아동, 북한이탈주민, 재산범죄 피해자 등은 기존 공탁금관리위원회에서 법률구조를 지원하였던 대로 대법원의 사법서비스진흥기금에서 법률구조 실비 및 수수료를 대납하기로 하였다.

---

3) 공탁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을 때 채무를 면제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하는 변제공탁,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의 담보 등과 관련한 재판상 보증공탁,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 해방금액의 공탁 등의 집행공탁 등으로 분류되고, 공탁금은 이러한 각종 공탁을 위해 공탁자가 법원 공탁관에게 공탁한 금액을 의미한다. 그동안 대법원은 공탁금 보관은행이 공탁금 운용 이자수익에서 관리비용 등을 차감한 수익을 공탁금관리위원회에 출연한 자금을 '공탁출연금'이라고 표현하였다.

4) 2014년 말 기준으로 공탁금은 6조 7,340억원, 공탁출연금은 490억원이었고 이는 주로 국선변호 지원, 소송구조 지원, 조정제도 지원, 법률구조단체 지원 등에 사용되었다.

5) 2016년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운용규모는 총 516억원이고 소송구조, 민사조정, 법률구조단체 지원 등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기금 재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공탁금관리위원회 소관 법률구조 재원의 부처별 전환 현황]

(단위: 백만원)

구조대상자	2016년 소요재원					
	2016년 처리건수 (예상)	단 가(원)		금액	대납 기관	자부담
합 계	25,563	소 계	-	6,979	4,777	2,202
		소송비용	-	3,314	1,112	2,202
		변호사보수	-	3,665	3,665	0
□ 대법원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구 공탁위 지원 유지)	15,135	소 계	-	4,257	3,224	1,033
		소송비용	-	2,000	967	1,033
		변호사보수	-	2,257	2,257	0
- 가족관계미등록자	176	소송비용	150,230	26	26	0
		변호사보수	150,230	26	26	0
- 소년소녀 가장	4	소송비용	150,230	1	1	0
		변호사보수	150,230	1	1	0
- 보호아동	11	소송비용	150,230	2	2	0
		변호사보수	150,230	2	2	0
- 북한이탈주민	188	소송비용	150,230	23	0	23
		변호사보수	150,230	28	28	0
- 소액임차인(기타영세민)	1,758	소송비용	276,276	389	0	389
		변호사보수	174,971	308	308	0
- 개인회생파산신청자	7,821	소송비용	119,922	938	938	0
		변호사보수	166,779	1,304	1,304	0
- 범죄피해자(재산)	5,177	소송비용	150,050	621	0	621
		변호사보수	113,541	588	588	0
□ 일반회계(여가부)지원 - 한부모가족	967	소 계	-	290	290	0
		소송비용	150,230	145	145	0
		변호사보수	150,230	145	145	0
□ 일반회계(복지부) 지원 - 장애인	4,521	소 계	-	1,193	669	524
		소송비용	144,907	524	0	524
		변호사보수	148,071	669	669	0
□ 보훈기금(보훈처) 지원 - 보훈대상자	1,236	소 계	-	376	182	194
		소송비용	195,884	194	0	194
		변호사보수	147,457	182	182	0
□ 범피기금(법무부) 지원 - 범죄피해자(신체)	3,704	소 계	-	863	412	451
		소송비용	152,366	451	0	451
		변호사보수	111,241	412	412	0

주 1. 대납기관은 각 부처, 자부담은 해당 법률구조를 받은 본인이 부담한 비용을 의미함.

2. 소송비용 자부담 대상자(북한이탈주민, 소액임차인, 재산범죄피해자, 장애인, 보훈대상자, 신체범죄피해자)의 경우 소송비용 상환 면제 등을 고려하여 지출액 대비 80%로 소요재원을 산정함.

자료: 법무부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법률구조는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법률구조는 대법원 사법서비스진흥기금으로 법률구조 재원을 이원화하여 지원할 근거가 부족하다. 또한, 이처럼 일부는 개별 부처의 일반회계 및 기금, 일부는 대법원의 사법서비스진흥기금으로 이원화하여 지원하는 형태로는 사업 내용 추적 및 효과성 분석이 곤란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특히 대법원 사법서비스진흥기금에서 법률구조 비용을 대납할 경우 해당 정책대상을 관할하는 소관 부처 및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에는 무료 법률구조 사업에 대한 일관된 기준 적용, 통합적 관리 및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업추진체계 및 재원조달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6 IOM 이민정책연구원의 지방자치단체 보조 및 자체수입 확대 노력 필요

가. 현 황

IOM 이민정책연구원 운영사업[1]은 국가 간 이주 현상 분석 등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중장기적 이민정책 방향을 연구하는 IOM 이민정책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IOM 이민정책연구원은 2009년 6월 한국과 국제이주기구(IOM) 간의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이주기구 간의 국제이주기구 이민정책연구원 설립에 관한 협정」 체결로 설립된 국제협력기구로서, 법무부는 IOM 이민정책연구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국고보조의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6년 법무부 보조금은 13억 100만원[2]으로 IOM 이민정책연구원 전체 재원의 약 76%를 차지하고 있다.

[IOM 이민정책연구원 연도별 재원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경상비	운영비	법무부(A)	1,156	1,126	1,294	1,272	1,272	1,264	1,226	1,254
	임차비	경기도	785	680	680	684	529	427	429	414
연구사업비		법무부(B)	0	0	0	0	300	151	47	47
		경기도	295	400	400	300	155	0	0	0
		고양시	323	462	366	100	0	0	0	0
합 계(C)			2,559	2,668	2,740	2,356	2,256	1,842	1,702	1,715
국고보조비율 [(A+B)/C]×100			45.2	42.2	47.2	54.0	69.7	76.8	74.8	75.9

자료: 법무부

채미강 예산분석관(river@assembly.go.kr, 788-4640)

1) 예산코드: 일반회계 1231-302

2) 인건비 및 법정부담금 11억 1,200만원, 일반운영비 1억 4,200만원, 연구사업비 3,200만원, 국제협력사업비 500만원, 홍보사업비 1,000만원

나. 분석의견

IOM 이민정책연구원의 수입 대부분을 법무부의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율을 높이고 자체 수입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법무부-경기도-국제이주기구 간 국제이주기구 이민정책연구원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2007. 11. 19.)」에 따르면, '경기도가 연구원 설립을 위한 재정을 지원하고 시설 및 설비를 제공'하기로 협의[3]하였다. 그러나 IOM 이민정책연구원의 수입재원을 살펴보면, 고양시 예산은 초기 4년 동안만 투입되었고 고양시는 2013년부터, 경기도는 2014년부터 IOM 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한 연구사업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이민정책 학술활동 등 연구성과가 저조하다는 판단 및 지방의회의 예산 재조정 요청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관이 설치된 취지를 고려할 때, 별도의 사업비 증가 없이 국고 경상경비 지원만 계속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따라서 법무부는 3자간 양해각서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투자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고, IOM 이민정책연구원은 외부 수탁사업 확대 등 국고보조금 외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

---

3) 「대한민국 법무부-경기도-국제이주기구 간 국제이주기구 이민정책연구원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 제1조(협력범위) 제1항제5호 '경기도는 연구원 설립을 위한 재정을 지원하고 연구원의 시설과 설비를 제공한다'

7 국립법무병원(공주 치료감호소)의 의료환경 기준 준수 필요 등

가. 현 황

치료감호자 수용관리[1]는 법원에서 치료감호 명령을 받은 정신질환 범죄자의 국립법무병원(공주 치료감호소) 격리조치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6년 예산현액 67억 4,800만원 중 64억 5,000만원(95.6%)을 집행하였고 2억 9,800만원을 불용하였다.

[치료감호자 수용관리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치료감호자 수용관리	6,964	6,964	0	△216	6,748	6,450	0	298

자료: 법무부

나. 분석의견

첫째, 국립법무병원은 환자당 면적 및 의료진 수 등에서 관계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미달하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의료기관 조건부 인증(2016. 7.)'[2]을 받았으므로 법무부는 의료진 확충 및 과밀수용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최근 10년간 국립법무병원의 평균 수용인원은 2006년 636명에서 2016년 1,159명으로 약 2배 증가(수용가능 정원 900명의 29% 초과)하였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3]에 따라 일반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입원환자 60명

채미강 예산분석관(river@assembly.go.kr, 788-4640)

1) 예산코드: 일반회계 1634-300

2)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평가대상 정신병원 142곳 중 조건부 인증을 받은 곳은 국립법무병원을 포함하여 3곳에 불과하며, 일반 인증은 4년 동안 유효하나 조건부 인증의 경우 1년 이내에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정신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등) ① 정신의료기관의 개설은 「의료법」에 따른다. 이 경우 「의료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정신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의 기준과 의료인 등 종사자의 수·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신의료기관의 규모 등을 고

당 정신과 전문의 1명을 배치하여야 하나, 국립법무병원은 입원환자 75명당 전문의 1명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다.[4]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2015년 방문조사 결과 정신과 전문의와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환자 2명 이상 입원실의 바닥 최소 면적은 환자 1명당 4.3㎡[5]이나, 국립법무병원의 1명당 수용면적은 3.36㎡으로 법정 기준에 미달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정신의료기관의 1실 정원은 10명 이하로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립법무병원은 강당형의 단일 병동에 50명을 수용하고 있는 등 집단 수용을 실시하고 있어 효과적인 치료감호를 실시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6]

[관련 규정상 기준 미달 내역]

구분	관련 규정상 기준	국립법무병원(미준수 내용)
정원	900명	1,159명(29% 초과)
정신과 전문의 수	입원환자 60명당 1명	입원환자 75명당 1명
간호사 수	입원환자 13명당 1명	입원환자 11명당 1명
2명 이상 입원실 바닥의 최소 면적	1명당 4.3㎡	1명당 3.36㎡
입원실당 정원	10명 이하	강당형 병동(50명 수용)

자료: 법무부

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따로 정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등) ②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4) 의사 정원 17명 중 현원 14명이며 이 중 정신과 전문의는 12명이다. 또한, 정원 외로 전공의 7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및 별표 4(전공의 1명=전문의 0.5명)에 따라 전공의 7명을 전문의 3.5명에 해당한다고 보면 정신과 전문의 총 15.5명이 배치되어 있는 것과 같다.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등) ①법 제19조제1항의 후단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정신의료기관의 시설·장비기준) → 2.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규격 및 장비 → 가. 입원실 1) 환자 1명이 사용하는 입원실의 바닥면적은 6.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환자 2명 이상이 사용하는 입원실의 바닥면적은 환자 1명당 4.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7) 입원실의 정원은 입원환자 10명 이하로 한다.

6) 이와 관련하여 현재 법무부는 유휴병동 리모델링('14~'16, 5개 병동)을 완료하였고, 치료감호소 시설 현대화('16~'18, 11개 병동)를 추진 중이다.

둘째, 국립법무병원은 정신질환 범죄자의 치료감호 외에도 법원, 검찰, 경찰로부터 의뢰받은 자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하여 감정유치[7] 수수료를 법무부 기타잡수입으로 세입처리하고 있으나, 법원은 연례적으로 해당 수수료를 완납하지 않아 법무부 세입결산 시 징수결정액 일부가 미수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법무병원은 법원 등 관계기관이 의뢰한 감정유치 건당 170~18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국고로 세입조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6년에는 법무부 기타잡수입(69-691)에 정신감정수수료 9억 1,400만원이 수납되었다.

그러나 법원의 경우 예산 부족을 이유로 2015년 500만원, 2016년 2,000만원을 미수납하였고,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된 이후에도 전년도 미납액을 즉시 납부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법무부는 관계 기관의 적정 예산 편성 및 조속한 납부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7) 감정유치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이 필요한 때에 법원이 기간을 정하여 의사 등의 전문가에게 감정시키기 위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피고인을 유치하는 강제처분을 의미한다(「형사소송법」 제172조제3항 참고).

법제처

Ⅰ 결산 개요

1 현 황

가. 총수입·총지출 결산

2016회계연도 법제처 소관 결산은 일반회계만으로 구성된다. 2016회계연도 법제처 소관 총수입은 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9,800만원(99.74%) 감소하였다.

[2016회계연도 법제처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2015 결산액(A)	2016				전년 대비 (C-A)
		예산액		결산액 (C)	추경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 산	399	0	0	1	1	△398

자료: 법제처

2016회계연도 법제처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8억 100만원(2.6%)이 감소한 305억 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4,800만원(6.5%)이 증가하였다.

[2016회계연도 법제처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2015 결산액(A)	2016				전년 대비 (C-A)
		예산액		결산액 (C)	추경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 산	28,657	31,306	31,306	30,505	△801	1,848

자료: 법제처

조흥연 예산분석관(risekite@assembly.go.kr, 788-4639)

나. 세입·세출 결산

2016회계연도 법제처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편성되지 않았으나 7,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100만원을 수납하고, 7,400만원을 미수납하였다.

[2016회계연도 법제처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세입 예산현액 (A)	징수 결정액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0	0	0	75	1	74	0	0

자료: 법제처

2016회계연도 법제처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313억 600만원이며, 이 중 97.4%인 305억 500만원을 지출하였고, 8억 1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6회계연도 법제처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세출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31,306	31,306	31,306	30,505	0	801	97.4

자료: 법제처

2 2016년도 예산 관련 국회 논의사항

법제처의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법제정비 사업, ② 세계법제정보서비스 사업, ③ 법제지원단 기본경비**가 있다. 법제정비 사업은 조례 전수 검토 용역 중 광역자치단체에 해당하는 부분은 법제처가 직접 수행하게 하고 그 외 관련 부분의 예산을 5,000만원 감액하였으며, 세계법제정보서비스 사업은 주요법령의 번역 감수에서 600만원, 세계법제정보센터 홍보비에서 55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법제지원단 기본경비는 의원입법 지원과 관련된 자문비, 연구보고서 발간비 등 2,900만원을 감액하였다.[1)]

1) 법제사법위원회, 「201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5.11.
국회,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5.12.

3 2016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법제처는 ① 정부 각 부처의 주요정책에 관한 **입법계획 수립 및 입법추진 상황 총괄·관리**, ② 불합리한 법령 및 규제법령 등 중점 **발굴·정비 추진,** ③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를 개선하여 **국가법령정보 이용자 증가 및 이용 편의 제고,** ④ 일반 국민에게 유용한 생활밀착형 **시행법령의 홍보**를 2016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16회계연도 법제처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법제처가 위촉한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촉위원 151명 중 46명은 2016년에 위원회에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다. 따라서 법제처는 참석률이 저조한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고, 참여가 가능한 전문가 위주로 위원을 위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법제처는 어린이법제관 사업에 대해 자체성과평가를 실시하였는데, 참여율이 높지 않음에도 행사인원 참석 부문에서 대부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의 실시 목적은 위탁사업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그 결과가 향후 계약 시 활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II 주요 현안 분석

1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원회 참석 저조 문제

가. 현 황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각 부처 및 국민 등의 법령해석 요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법 해석에 대한 정부 견해를 일원화하고 법 집행의 공정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운영된다.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총 9인(위원장 1인, 외부 위촉위원 7인, 당연직 위원 1인)으로 구성되며, 통상 주 1회 개최되어 2016년에는 총 45회 개최되었다.

[2013~2016년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개최현황]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개최현황	48회	48회	40회	45회

자료: 법제처

나. 분석의견

법제처가 위촉한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 151명 중 46명은 2016년에 위원회에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법제처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7조의2제2항[1]에 따라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151명의 위촉위원[2]을 두고 있으며, 이 중 7명이 안건에 따라 위원회 심의에 참석하게 된다. 위원회 참석위원은 「위원 수당 및 자문료 등 지급에 관한 규정」(법제처 예규 제68호)에 따라 참석수당 15만원, 사전검토수당 15만원, 주심수당 10만원(주심안건 1건당)을 지급받는다.

조흥연 예산분석관(risekite@assembly.go.kr, 788-4639)

1)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7조의2(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제4항에 따른 위원(이하 "지명위원"이라 한다) 및 제5항에 따른 150명 내외의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2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그런데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위원회 참석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단 한 차례도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위원이 있으며, 2013년 26명, 2014년 16명, 2015년 34명, 2016년 46명 수준이다.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참석현황]

(단위: 명)

년도	전체인원	6회 이상	5회	4회	3회	2회	1회	0회
2013년	123	10	13	20	17	22	24	23
2014년	122	2	10	34	20	28	11	16
2015년	145	0	0	18	28	41	42	34
2016년	140	5	5	28	30	20	17	46

자료: 법제처

위촉위원이 법제처의 위원회 참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은 것은 위촉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법제업무운영규정」은 150명 내외의 위촉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법 해석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지식을 가진 위원들을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활용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였을 때, 위촉위원이 참석하지 않는 것은 동 위원회 운영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법제처는 위촉위원이 적극적으로 참석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위원의 위촉 및 연임 결정 시 위원회 참석 가능성 등을 면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Ⅲ 개별 사업 분석

1 어린이법제관 사업에 대한 자체성과평가의 객관성 확보 필요

가. 현 황

어린이법제관 사업은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법안 만들기, 법 관련기관 탐방, 법령퀴즈 골든벨 등 다양한 입법체험활동을 통해 준법정신 및 법치행정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정보제공 사업[1]의 내역사업이다. 법제처는 어린이법제관 사업의 2016년 예산현액 2억 8,700만원 중 2억 6,800만원을 집행하였고, 1,800만원을 불용하였다.

[법령정보제공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법령정보제공	1,308	1,308	0	19	1,308	1,268	0	40
어린이법제관	287	287	0	0	287	268	0	18

자료: 법제처

나. 분석의견

법제처는 어린이법제관 사업에 대해 자체성과평가를 실시하였는데, 참여율이 높지 않은 프로그램의 행사인원 참가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위탁사업의 경우 계약기간 종료 이전에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수탁기관의 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향후 계약 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위탁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어린이법제관 사업에 대해 자체성과평가를 실시하였다.

조홍연 예산분석관(risekite@assembly.go.kr, 788-4639)

1) 예산코드: 일반회계 1031-300

그런데 법제처가 2016년에 실시한 어린이법제관 자체성과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참가 부문[2]의 경우 토론마당과 법 관련기관 탐방에서 예상인원 대비 참여율이 각각 68.4%, 47.1%을 기록하여 참여율이 높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행사참가인원 부문에서 20점 만점에 각각 19점을 받아 평가의 객관성 측면에 일부 부적정한 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어린이법제관 사업 참가 인원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한마당	예상인원	200	150	150
	참가인원(참여율)	112	106	122(81.3)
토론마당	예상인원	962	900	820
	참가인원(참여율)	572	526	561(68.4)
법 관련 기관 탐방	예상인원	280	1,010	770
	참가인원(참여율)	174	564	363(47.1)
법안 만들기	예상인원	120	200	150
	참가인원(참여율)	112	103	107(71.3)
법령퀴즈 골든벨	예상인원	0	150	150
	참가인원(참여율)	0	144	134(89.3)
국회 탐방	예상인원	0	0	200
	참가인원(참여율)	0	0	256(128.0)
사회적배려 계층 행사	예상인원	130	132	120
	참가인원(참여율)	126	96	89(74.2)

자료: 법제처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목적은 위탁사업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그 결과가 향후 계약 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법제처는 위탁사업의 자체성과평가에 대한 평가 기준의 적정성 등을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2) 법제처는 참석인원 성과평가 기준은 실제 어린이법제관의 참여비율과 위탁업체에서 충분한 행사지원 인원을 배치하여 행사를 원활히 수행했는지 등 2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어린이법제관 프로그램별 참여율을 살펴보면 토론마당의 경우 3년 연속 70%를 하회하였고, 법 관련기관 탐방은 2년 연속 50% 수준에 머물고 있으므로, 법제처는 어린이 법제관 사업의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세계법제정보센터 홍보 예산 집행 방식 부적정

가. 현 황

세계법제 지원 사업은 해외법령, 법제 연구보고서, 입법동향 등 세계법제정보를 국가별·분야별로 체계화하여 제공하는 세계법제정보센터 운영과 법령의 외국어 번역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세계법제정보서비스 사업[1]의 내역사업이다. 법제처는 세계법제 지원 사업의 2016년도 예산현액 3억 6,500만원 중 3억 6,100만원을 집행하였고, 400만원을 불용하였다.

[세계법제 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세계법제정보 서비스	508	508	0	19	508	501	0	7
세계법제 지원	365	365	0	0	365	361	0	4
일반수용비	49	49	0	0	49	47	0	2
위탁사업비	316	316	0	0	316	314	0	2

자료: 법제처

법제처는 「법령정보의 제공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2]에 따라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운영관리를 '법령정보관리원'에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사업비로 예산현액 3억 1,600만원 중 3억 1,4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0만원을 불용하였다.

조흥연 예산분석관(risekite@assembly.go.kr, 788-4639)

1) 예산코드: 일반회계 1031-301

2) 「법령정보의 제공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발행자의 지정 및 업무위탁) ① 법제처장은 제3조에 따른 법령집의 발행·보급업무를 대행할 자(이하 "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자는 법령정보의 제공·관리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법제처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② 법제처장은 법령정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보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발행자에 위탁할 수 있다
3.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운영·관리

나. 분석의견

세계법제정보센터 홍보 예산이 여러 세부사업에서 각각 집행되고 있어 예산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 부적정한 점이 있다.

동 사업 내 세계법제정보센터 홍보비는 위탁사업비 내에 950만원이 편성되었고, 법령정보관리원은 이를 활용하여 카탈로그, 홍보물품 등을 제작하였다.

한편 법제처는 동 사업 내 일반수용비를 활용하여 세계법제정보센터의 홍보 카탈로그를 제작하였으며, 법령정보제공 사업의 내역사업인 법제정책알리기 사업에서도 일반수용비 1,600만원을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온라인 홍보비로 집행하였다.

[세계법제지원센터 홍보비 집행 내역]

(단위: 만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비목	집행목적	집행액
법령정보제공	법제정책알리기	일반수용비 (210-01목)	세계법제정보센터 온라인 홍보	1,600
세계법제정보서비스	세계법제지원	일반수용비 (210-01목)	세계법제정보센터 홍보 (카탈로그 제작)	250
		위탁사업비 (210-07목)	세계법제정보센터 홍보 (카탈로그 제작, 홍보물품 제작 등)	950

자료: 법제처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콘텐츠의 내용, 방법, 기간 등이 다르고 중요도나 시의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집행하였다는 입장[3]이나, 세계법제정보센터의 홍보를 법령정보관리원에 위탁하고 있음에도 법제처에서 추가로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다른 세부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온라인 홍보를 실시하는 것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다소 부적정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법제처는 세계법제정보센터의 홍보를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등 사업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3) 세계법제정보서비스 사업의 일반수용비는 KOTRA 해외투자 설명회, 충남 전략품목 수출상담회에서 법제처가 자체적으로 세계법제정보센터를 홍보하기 위해 카탈로그를 제작한 것이며, 법제정책알리기사업의 세계법제정보센터 온라인 홍보는 법제정보 서비스 전반에 대한 사업 소개 과정의 하나로 유형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3 법제교육센터 공공요금 집행 부진

가. 현 황

법제교육 사업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법규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법령 입안 및 운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제전문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양성 사업[1]의 내역사업이다. 법제처는 법제교육 사업의 2016년 예산현액 9억 6,000만원 중 8억 8,600만원을 집행하였고, 7,400만원을 불용하였다.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양성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양성	1,118	1,118	0	0	1,118	1,034	0	84
법제교육	960	960	0	0	960	886	0	74

자료: 법제처

나. 분석의견

법제처는 법제교육센터의 공공요금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적정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최근 3년 간의 법제교육센터 공공요금 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2014년의 경우 4,7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으나, 2015년과 2016년의 경우 4,800만원 중 각각 1,800만원, 3,000만원을 불용하였다.

조홍연 예산분석관(risekite@assembly.go.kr, 788-4639)

1) 예산코드: 일반회계 1034-300

[법제교육 사업 공공요금 및 제세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2014	47	47	0
2015	48	30	18
2016	48	18	30

자료: 법제처

이에 대해 법제처는 전기·수도요금 등과 같이 법제교육센터로 직접 고지된 금액은 법제교육 공공요금 예산에서 집행하였으나, 국가정보통신 회선 이용료나 우편요금 등과 같이 법제처로 고지된 금액은 법제교육센터 사용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법제처 기관운영 기본경비 사업[2]에서 집행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제교육센터 사용분 중 일부를 법제처 기관운영 기본경비 사업으로 집행하는 경우 해당부분은 동 사업에 편성할 필요성이 적다는 점에서 향후 법제처는 적정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2) 예산코드: 일반회계 7011-250

감사원

Ⅰ 결산 개요

1 현 황

가. 총수입·총지출 결산

2016회계연도 감사원 소관 결산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2016회계연도 감사원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3,100만원(7.2%)이 증가한 4억 6,0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1억 1,400만원(32.9%)이 증가하였다.

[2016회계연도 감사원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2015 결산액(A)	2016				전년 대비 (C-A)
		예산액		결산액 (C)	추경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 산	346	429	429	460	31	114

자료: 감사원

2016회계연도 감사원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18억 8,800만원(1.6%)이 감소한 1,163억 2,9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61억 1,800만원(5.6%)이 증가하였다.

[2016회계연도 감사원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2015 결산액(A)	2016				전년 대비 (C-A)
		예산액		결산액 (C)	추경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 산	110,211	118,217	118,217	116,329	△1,888	6,118

자료: 감사원

오덕근 예산분석관(whale@assembly.go.kr, 788-4641)

나. 세입·세출 결산

2016회계연도 감사원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4억 2,900만원이며, 8억 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4억 6,000만원을 수납하고 3억 4,900만원을 미수납하였다. 감사원 소관 세입 총계는 총수입과 동일하다.

[감사원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예산 (A)					
일반회계	429	429	809	460	349	0	107.2

자료: 감사원

2016회계연도 감사원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192억 7,400만원이며, 이 중 97.5%인 1,163억 2,900만원을 지출하고 10억 2,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9억 2,3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다. 감사원 소관 세출 총계는 총지출과 동일하다.

[감사원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예산					
일반회계	118,217	118,217	119,274	116,329	1,022	1,923	97.5

자료: 감사원

2 2016년도 예산 관련 국회 논의사항

감사원의 2016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기본경비, ② 감사활동경비**가 있다. 기본경비는 신설되는 '밸런스힐링과정'이 기존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집행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800만원(106억 2,800만원 → 106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다. 감사활동경비는 각종 위원회 예산의 불용이 반복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1억 600만원(231억 2,800만원 → 230억 2,200만원)이 감액되었다.

3 2016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감사원은 정부의 재정운용 목표에 적극 동참하여 최대한 경비를 절감하되, 절감재원은 회계검사·직무감찰 등 헌법상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감사활동 인프라 개선 등 감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에 적극 반영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하였다.

그러나 2016회계연도 감사원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감사자료 분석시스템 사업추진 지연에 따라 연례적으로 이월이 발생하였다. 현재 감사원은 감사자료 분석시스템 구축사업을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는데,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사업비가 이월되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지 않으므로, 향후 다년도 사업 추진 시 사업추진경과를 감안하여 연차별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의 2016년 회의개최실적 및 예산집행률이 저조하였다.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의 2016년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30.8%에 불과하므로, 향후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의 회의소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II 개별 사업 분석

1 정보화사업의 사업추진일정을 감안한 예산편성 필요

가. 현 황

감사자료 분석시스템은 수감기관 시스템과 연계하여 상시적으로 감사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산운영경비(정보화)[1]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감사원은 2016년 예산현액 35억 5,600만원 중 26억 9,500만원을 집행하고, 8억 6,000만원을 이월하였다.

[전산운영경비(정보화)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전산운영경비	6,160	6,160	972	0	7,132	5,957	1,006	169
감사자료 분석시스템	2,584	2,584	972	0	3,556	2,695	860	1

자료: 감사원

나. 분석의견

감사자료 분석시스템 사업비의 연례적 이월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정보화사업 추진 시 사업추진일정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감사원은 감사자료 분석시스템 구축을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는데, 각 단계에 따라 지방재정자료 분석시스템(1단계), 교육재정자료 분석시스템(2단계), 공공기관 재정자료 시스템(3단계)을 순차적으로 구축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2015년 13억 900만원, 2016년 25억 8,4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2017년 예산액 39억 5,000만원과 ISP 용역비 4억 9,000만원을 포함한 전체 사업비는 83억 3,000만원이다.

오덕근 예산분석관(whale@assembly.go.kr, 788-4641)

1) 예산코드: 일반회계 1134-309

[감사자료 분석시스템 구축 추진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사업 기간	예산액	비 고
IT기반 감사체계 구축 연구용역(ISP)	2014. 07. ~ 2015. 04.	4.9	- 지방재정, 교육재정 등에 대한 자료 수집 시기를 3단계로 구분 - 소요예산 116억원 제시 등
IT기반 감사체계 기본계획	2015. 07.	-	
1단계	2015. 11. ~ 2016. 08.	13.1	- 「IT기반 감사체계 기본계획」 수립(7월) 이후 추진
2단계	2016. 06. ~ 2017. 04.	25.8	- 사업대상 확대 및 분석기법 고도화 소요기간연장(6개월 → 10개월)
3단계	2017. 05. ~ 2017. 12.	39.5	
전체 구축사업	2015. 11. ~ 2017. 12.	83.3	

자료: 감사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2015년 지방재정자료 수집·분석시스템(1단계)이 연내에 완료되지 못함에 따라 9억 7,200만원이 이월된 바 있으며, 동 사업은 2016년 8월에 완료되었다. 이에 따라 2단계 사업도 2016년 6월에 시작하여 2017년 4월까지로 순연되었으며, 2016년 사업비 8억 6,000만원이 이월되었다.

사업비 이월의 주된 사유는 예산편성 당시 사업추진일정에 대한 고려가 충분치 않았기 때문이다. 동 사업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시스템의 구축방향과 내용을 결정할 "IT기반 감사체계 구축 연구용역(ISP)"이 2015년 4월에 완료되었고, 이를 토대로 "IT기반 감사체계 기본계획"을 2015년 7월에 수립함에 따라 1단계 사업이 연도 말인 2015년 11월에 계약이 체결되었다. 또한, 2016년도 2단계 사업은 교육재정 연계·분석시스템 구축으로서 연내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교육재정에 더해 공간정보, 인·허가 자료 등으로 사업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분석기법 고도화를 추진함에 따라 사업기간이 6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되어 8억 6,000만원이 이월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는 2015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에도 지적되었고[2], 2016년에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어 발생한 만큼, 감사원은 정보화사업 추진 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일정에 따른 예산편성을 통해 사업비가 이월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2) 국회예산정책처,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2016. 7., p.70

2 감사청구 심사 · 자문위원회의 적정예산 편성 필요

가. 현 황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는 감사청구사항에 대한 감사실시여부 및 처리부서의 지정 등에 관한 자문기구로서 감사활동경비 사업[1]에 운영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자문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2016년 예산현액 2,200만원 중 679만원이 집행되었으며, 1,521만원은 불용되었다.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감사활동경비	484	484	0	0	484	464	0	20
공익감사청구 자문위원회 운영	22	22	0	0	22	7	0	15

자료: 감사원

자문위원회는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감사원 훈령) 제10조[2]를 근거로 설치되며,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나. 분석의견

자문위원회의 2016년 회의개최실적 및 예산집행률이 저조하므로, 감사청구자문의 소요를 검토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오덕근 예산분석관(whale@assembly.go.kr, 788-4641)

1) 예산코드: 일반회계 1131-303

2)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감사원 훈령) 제10조(자문위원회) ① 감사청구사항에 대한 감사실시(감사청구사항 검토보고서 작성을 위한 사전조사 시 실시하는 실지조사는 제외) 여부의 결정과 제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감사청구사항에 대한 처리부서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감사청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감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자문위원회의 2016년 예산액은 2,200만원으로 일반수용비 2,100만원, 관서업무비 100만원이 편성되었다. 그러나 집행액은 679만원으로서 집행률이 30.8%에 불과하다.

[2016년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 예산 집행 현황]

(단위: 천원)

예산비목	집행내역	예산액	집행액
일반수용비(210-01)	참석수당, 안건검토수당, 회의부대경비	21,000	5,886
관서업무비(240-02)	회의 개최 운영	1,000	899
계		22,000	6,785

자료: 감사원

이는 회의개최 실적이 저조함에 따른 것인데, 2016년 자문위원회는 2월, 6월, 10월에 한 차례씩 총 3회 개최되었다.

[2016년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 개최 실적]

개최일자	개최장소	안 건
02. 01.	감사원	• 누리과정 예산 편성 관련
06. 29.	감사원	• 청와대의 어버이연합 등 극우단체 개입 의혹 관련 •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및 부실경영 관련 • 가습기 살균제 피해조사 및 피해신고의 소극행정 관련 •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관한 환경부의 책임 관련
10. 25.	감사원	• 서울시 보조금 불법 교부 등 관련 •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비리 의혹 관련

주: 참석수당은 외부위원에게 지급됨.
자료: 감사원

한편, 감사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4조[3] 및 「국민감사청구·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3조[4]에 근거하여 "국민감사청구심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4조(감사실시의 결정) ① 제7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국민감사청구·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3조(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① 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감사청구(이하 "감사청구"라 한다)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사위원회"[5]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6년도 개최실적이 5회로서 자문위원회보다 많으나, 예산편성액은 700만원으로 자문위원회보다 적다.

[2016년 자문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개최 실적]

(단위: 천원)

구 분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
설치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4조 「국민감사청구·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 관한 규칙」 제3조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감사원 훈령) 제10조
위원회 구성	전체 7명 -당연직 3명(감사원 제1사무차장, 제2사무차장, 공직감찰본부장) -외부인사 4명	전체 7명 -당연직 3명(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 감사청구조사단장, 심의실장) -외부인사 4명
설치 목적	국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 결정(필수절차)	감사청구사항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과 처리부서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총장에 대한 자문(재량절차)
개최 실적	5회	3회
예산액	7,000	22,000
집행액	11,457	6,785

자료: 감사원

따라서 감사원은 향후 자문위원회의 회의소요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5) 감사원은 감사청구 절차를 국민감사청구와 공익감사청구로 구분하고 있는데, 국민감사청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공익감사청구는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감사원 훈령)을 근거로 한다. 국민감사청구대상이 공공기관의 법령위반, 부패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로 한정되는 데에 비해, 공익감사청구대상은 공공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외에 제도개선사항, 주요정책·사업추진 상의 낭비 등을 포함하고 있다.

대법원

Ⅰ 결산 개요

1 현 황

가. 총수입·총지출 결산

2016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결산은 일반회계, 등기특별회계, 사법서비스진흥기금으로 구성된다.

2016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총수입은 7,544억 1,300만원으로 예산액 9,492억 7,600만원 대비 79.5% 수납되었으며,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450억 2,200만원(5.6%)이 감소하였다.

[2016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2015 결산액(A)	2016				전년 대비 (C-A)
		예산액		결산액 (C)	추경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 산	799,435	897,686	897,686	700,595	△197,091	△98,840
기 금	0	51,590	51,590	53,818	2,228	53,818
합계(총수입)	799,435	949,276	949,276	754,413	△194,863	△45,022

주: 기금은 사법서비스진흥기금으로서 2016년에 신설되었음.
자료: 대법원

2016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총지출은 1조 7,044억 4,400만원으로 예산액 1조 7,799억 5,100만원 대비 95.8%를 집행하였으며,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884억 6,600만원(5.5%)이 증가하였다.

오덕근 예산분석관(whale@assembly.go.kr, 788-4641)

[2016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2015 결산액(A)	2016				전년 대비 (C-A)
		예산액		결산액 (C)	추경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 산	1,615,978	1,728,361	1,728,361	1,650,626	△77,735	34,648
기 금	0	51,590	51,590	53,818	2,228	53,818
합계(총지출)	1,615,978	1,779,951	1,779,951	1,704,444	△75,507	88,466

주: 기금은 사법서비스진흥기금으로서 2016년에 신설되었음.
자료: 대법원

나. 세입·세출 결산

2016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8,976억 8,600만원이며, 7,076억 8,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7,005억 9,500만원을 수납하고 70억 8,2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4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하였다.

[2016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세입 예산현액 (A)	징수 결정액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574,815	574,815	574,815	420,735	418,538	2,193	4	72.8
등기특별회계	322,871	322,871	322,871	286,946	282,057	4,889	0	87.4
합 계	897,686	897,686	897,686	707,681	700,595	7,082	4	78.0

자료: 대법원

2016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조 7,314억 6,700만원이며, 이 중 95.3%인 1조 6,506억 2,600만원을 지출하고 59억 3,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49억 5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16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1,405,489	1,405,489	1,406,427	1,396,681	2,152	7,594	99.3
등기특별회계	322,871	322,871	325,040	253,945	3,784	67,311	78.1
합 계	1,728,360	1,728,360	1,731,467	1,650,626	5,936	74,905	95.3

자료: 대법원

다. 기금 결산

2016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기금의 수정수입계획액은 515억 9,000만원이며, 582억 6,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538억 1,800만원을 수납하였다.

[2016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기금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수입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수납률 (B/A)
	당초	수정(A)					
사법서비스진흥기금	51,590	51,590	58,266	53,818	383	1	104.3

자료: 대법원

2016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기금의 수정지출계획액과 계획현액은 515억 9,000만원이나, 538억 1,8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1,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1억 3,3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6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기금 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지출계획액		계획현액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당초	수정(A)					
사법서비스진흥기금	51,590	51,590	51,590	53,818	118	1,133	104.3

자료: 대법원

라. 재정구조

2016회계연도 대법원의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회계·기금 간 거래는 없으며, 회계 간 거래를 살펴보면, 등기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400억원, 공무원연금기금으로 108억 1,000만원이 전출되었다.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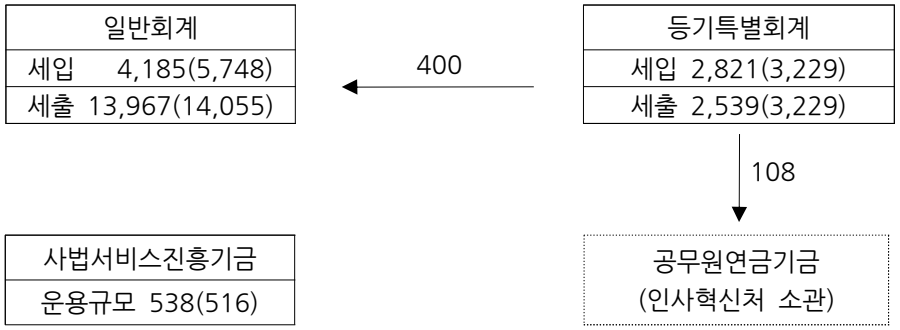

주: 총계 결산 기준
자료: 대법원

2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관련 국회 논의사항

대법원의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도서관운영지원 사업, ② 법관 등 연수 및 국제협력 사업, ③ 사법정책연구개선 사업**이 있다.

도서관운영지원 사업은 생활판례집 책자를 발간하여 기관에 비치하는 것은 사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1억원이 감액(21억원 → 20억원)되었다. 법관 등 연수 및 국제협력 사업은 개발도상국 사법역량 강화 사업의 집행실적 저조 등을 이유로 5,000만원이 감액(83억 8,000만원 → 83억 3,000만원)이 되었으며, 사법정책연구개선 사업 중 남북교류 및 통일대비 법적문제 연구사업은 사업규모에 비해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음을 이유로 2,000만원이 감액(36억 2,000만원 → 36억원)되었다.[1)]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 **① 국선변호료 지원 사업, ② 법원예비금** 등이 있다.

국선변호료 지원 사업은 국선변호료가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연체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27억원이 증액(524억원→551억원)되었고, 법원예비금은 1억원 증액(5억원→6억원)되었다.[2)]

---

1) 법제사법위원회, 「201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5.10.
국회,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5.12.

2) 법제사법위원회, 「201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5.10.
국회,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5.12.

3 2016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대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일체의 법률상 쟁송을 심판하고, 등기 · 가족관계등록 · 공탁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 감독하는 기관이다. 법의 지배 확립을 통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보장이라는 사법이념 확립을 위해 2016년에는 ① 세출예산 과목 구조 개편을 통한 재원배분의 합리성 제고, ② 기존 공탁출연금의 국가재정 편입을 통한 재정운영의 신뢰성 제고를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16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현재 빈곤 등의 사유로 청구되는 국선변호인 지원대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원 기준 및 관련 절차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국선변호인 지원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는 헌법 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국선변호인 지원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향후 대법원은 국선변호인 지원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국선변호인 지원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예산 집행 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벗어나거나, 편성목적과 달리 사용되는 사례가 있었다. 법원도서관에서 구독하는 DB 서비스 중 다수의 사례에서 계약기간이 2016회계연도를 벗어나 있고,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편성한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 예산 전액은 강의실 증축사업에 집행되었다.

셋째, 법원공무원교육원의 인건비(기타직보수)가 과다편성되어 있으므로, 적정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동 예산은 신입직원들의 보수로 집행되는 예산이나,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집행률이 저조하다. 따라서 대법원은 실현가능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II 개별 사업 분석

1 국선변호인 지원대상 기준 명시 필요

가. 현 황

국선변호료지원 사업[1]은 구속영장심문을 받은 피의자, 구속피의자·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을 의무화함으로써 형사절차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6년 예산액은 551억 4,300만원이며, 549억 2,3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2,000만원을 불용하였다.

[국선변호료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국선변호료지원	55,143	55,143	0	0	55,143	54,923	0	220

자료: 대법원

국선변호인은 「형사소송법」 제33조[2]에 근거하여 지원되며, 「인신보호법」 제12조[3]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사인에 의한 시설의 피수용자도 지원대상이 된다.

오덕근 예산분석관(whale@assembly.go.kr, 788-4641)

1) 예산코드: 일반회계 1145-408

2)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②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인신보호법」 제12조(심리의 공개 및 국선변호인 선임) ② 피수용자와 구제청구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구제청구자 등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구제청구자 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제청구가 명백하게 이유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분석의견

현재 빈곤 등의 사유로 청구되는 국선변호인 지원대상자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원기준 및 관련 절차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33조제2항은 피고인이 빈곤 등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변호인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빈곤 등의 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또한, 빈곤 등 사유로 법원에 국선변호인을 청구할 때 어떤 서류를 제출하는지에 관한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통상적으로는 소득세납입증명서, 주민세납부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기타 장애인등록증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동 서류들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다.

이는 국선변호인 청구 시 지원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제도 운용에 관한 신뢰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국선대리인 선임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0조[4]에서 무자력자에 대한 국선대리인 선임을 규정하고,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헌법재판소 규칙) 제4조[5]에서 관련 절차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국선변호료지원 사업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는 헌법 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국선변호인 지원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향후 대법원은 국선변호인 지원기준 및 절차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4) 「헌법재판소법」 제70조(국선대리인) 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資力)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9조에 따른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

5)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제4조(선임기준 및 절차)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규정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월평균수입이 230만원 미만인 자
2. 삭제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위 각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시각·청각·언어·정신 등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지 여부 또는 청구인이나 그 가족의 경제능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②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헌법소원사유를 명시하고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임을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위배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보정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2 DB 구독 계약 시 회계연도 독립 원칙 준수 필요

가. 현 황

디지털도서관개발 및 운영 사업[1]은 판례, 법령 및 법률문헌 등의 원문 DB를 구축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2016년 예산액은 16억 4,900만원이며, 15억 4,0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900만원을 불용하였다.

[디지털도서관개발 및 운영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디지털도서관개발 및 운영	1,649	1,649	0	0	1,649	1,540	0	109

자료: 대법원

디지털도서관에서는 학술논문, 국내외 법률자료 등에 대한 정기구독 계약을 통해 법원 사무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 정리하여 서비스하는 종합법률정보센터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나. 분석의견

디지털도서관 DB 서비스 구독 계약사업비를 전년도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대법원에서는 정기적으로 관련 업체와 계약을 맺어 디지털도서관 DB 자료를 구독하고 있다. 그런데 구독계약의 대부분은 계약기간이 회계연도를 벗어나고 있어 「국가재정법」 제3조[2]에 규정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

오덕근 예산분석관(whale@assembly.go.kr, 788-4641)

1) 예산코드: 일반회계 1139-521

2)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국내외 상용 Web DB 구독 계약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DB 서비스 내용	예산액	계약액	지출액	계약기간
1	특별법 위주 온라인 주석	11	11	11	2016. 01. ~ 2017. 01.
2	일본 법령, 판례, 문헌 등의 원문	18	18	18	2016. 03. ~ 2017. 02.
3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의 법령, 판례, 문헌	20	20	20	2016. 06. ~ 2016. 12.
4	영국, 유럽 경쟁법 분야의 종합자료	5	5	5	2016. 05. ~ 2017. 04.
5	국내 학회, 대학연구소 등 발간 간행물 원문 자료	5	5	5	2016. 05. ~ 2017. 04.
6	국내 학회, 대학연구소 등 발간 간행물 원문 자료	3	3	3	2016. 04. ~ 2017. 03.
7	독일의 법령, 판례	8	8	8	2015. 12. ~ 2016. 11.
8	노동법 관련 학술 DB	1	1	1	2016. 05. ~ 2017. 05.
9	프랑스의 법령, 판례, 문헌자료, 저널	4	4	4	2016. 08. ~ 2016. 12.
10	도서요약서비스	19	19	19	2016. 12. ~ 2017. 11.
11	국내 조세 관련 법령, 예규, 판례	17	17	17	2017. 01. ~ 2017. 12.
12	외국 법률 관련 학술저널 서지정보 및 전문	8	8	8	2017. 01. ~ 2017. 12.
	계	119	119	119	

주: DB 서비스 중 [연번 7]독일의 법령, 판례서비스는 후불 종량제로 처리되어 요금을 확인하는 청구기간(12월)이 포함된 것임.

자료: 대법원

2016년도 12건의 구독 계약 가운데 3건을 제외한 9건의 계약기간은 2016년도를 벗어나 있으며, 국내 조세 관련 DB 및 외국 법률 관련 학술저널 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2017년도에만 해당되고 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회계연도 구분에 맞춰 계약기간을 조정하는 한편, 차년도 사업에 대한 소요를 당해연도 예산으로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3 양형위원회 의견수렴절차 활성화 필요

가. 현 황

양형위원회 운영 사업은 형법상 범죄의 양형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심의기구인 양형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법정책연구개선 사업[1]의 내역사업이다. 2016년 예산액 20억 5,000만원 중 20억 3,400만원을 집행하고, 1,700만원을 불용하였다.

[양형위원회 운영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사법정책연구개선	3,600	3,600	331	0	3,931	3,487	417	27
양형위원회운영	2,050	2,050	0	0	2,050	2,034	0	17

자료: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이 아닌 위원 중 1명이 상임위원[2]이 된다.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는 양형기준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다.

나. 분석의견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 설정 시 의견수렴과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양형위원회가 설정하는 양형기준은 적정 양형에 관한 사항으로서, 범죄구성요건과 함께 형사입법체계의 주요사항으로 볼 수 있다.[3] 양형위원회 설치 근거인 「법원조직법」 제81조의2[4]는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오덕근 예산분석관(whale@assembly.go.kr, 788-4641)

1) 예산코드: 일반회계 1143-405

2) 통상적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상임위원으로 임명되고 있다.

3) 이러한 측면에서 양형위원회는 일정부분 입법기구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2006년 동 위원회 신설에 관한 논의 시 입법부와 사법부 중 어느 기관 산하에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74220)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보고서(2006. 12.)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형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양형위원회는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양형기준 설정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대법원은 2016년 양형위원회 운영계획을 수립하면서 양형위원회 회의 계획을 89회로 확대하였다. 이는 2015년도에 비해 두 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2016년 실시된 회의는 24회로 오히려 2015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양형위원회 회의계획 및 개최 현황]

(단위: 건, %)

회의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획	실시	실시율	계획	실시	실시율	계획	실시	실시율	계획	실시	실시율
양형위원회 회의	12	8	67	12	7	58	10	9	90	12	7	58
양형위원회 소위원회	8	0	0	8	0	0	3	0	0	7	0	0
전문위원 회의	20	14	70	20	9	45	18	13	72	25	9	36
전문위원 팀별 회의	20	0	0	20	0	0	4	0	0	25	0	0
양형위원 워크숍	2	1	50	2	0	0	1	1	100	2	1	50
전문위원 워크숍	2	0	0	2	0	0	1	1	100	2	0	0
자료분석관 워크숍	2	1	50	2	1	50	2	1	50	2	1	50
자료분석관 토론회	4	2	50	4	2	50	2	2	100	4	1	25
자료분석관 교육	2	1	50	2	1	50	2	1	50	2	1	50
자문위원 회의	4	1	25	4	1	25	2	1	50	4	2	50
공청회	2	1	50	2	3	150	1	0	0	4	2	50
공개토론회	1	0	0	1	0	0	0	0	-	0	0	-
계	79	29	37	79	24	30	46	29	63	89	24	27

자료: 대법원

특히 양형위원회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 팀별회의는 2016년 실시계획에서 각각 7회, 25회로 2015년 대비 크게 확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이후 단 한 차례도 실시되지 않았다. 또한 외부 전문가 또는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문위원 회의, 공청회는 각각 2회만 실시되었으며, 공개토론회나 여론조사는 실시되지 않았다.

4) 「법원조직법」 제81조의2(양형위원회의 설치) ① 형(刑)을 정할 때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量刑)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를 둔다.

[양형위원회 회의현황]

회의 구분	회의 기능(목적)
양형위원회 회의	형을 정함에 있어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함.
양형위원회 소위원회	위원회에 상정된 의결안건의 검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함.
전문위원 회의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함.
전문위원 팀별 회의	전문위원 업무의 효율성,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팀별 회의를 진행함.
양형위원 워크숍	회의장 아닌 외부장소에서 주제발표 및 자유토론을 하여 업무수행에 있어서 소속감을 부여하고 사기를 진작
전문위원 워크숍	회의장 아닌 외부장소에서 주제발표 및 자유토론을 하여 업무수행에 있어서 소속감을 부여하고 사기를 진작
자료분석관 워크숍	양형자료 분석에 관한 주제발표와 자유토론을 통하여 업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에 반영하여 업무의 통일성, 전문성 제고
자료분석관 토론회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능력을 습득하게 하고, 업무에 대한 수행 능력의 증진을 위함.
자료분석관 교육	신규 자료분석관 및 직원들로 하여금 양형자료조사 및 양형기준 운영점검 업무 전반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함.
자문위원 회의	각계 전문가들의 양형기준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
공청회	양형기준안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함.
공개토론회	국민적 관심도가 특히 높은 범죄군에 관하여는 전문가와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양형기준의 객관성을 제고함.

자료: 대법원

따라서 향후 대법원은 양형기준 산정에 관한 현안논의 및 외부 의견수렴 절차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4 법원공무원교육원 강의실 확충공사비 집행 부적절

가. 현 황

교육원 운영지원[1] 사업은 법원공무원교육원 청사관리 및 교육교재 제작 등을 위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법원은 2016년 예산현액 32억 6,400만원 중 26억 3,300만원을 집행하고 6억 2,500만원을 이월하였다.

[교육원 운영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교육원 운영지원	3,264	3,264	0	0	3,264	2,633	625	6
시설비	655	655	0	0	655	30	625	0

자료: 대법원

동 사업 내 시설비(420-03목)는 강의실 확충공사(4억원), 노후시설 개보수(2억 5,500만원)를 위해 6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3,000만원이 집행되고 6억 2,500만원은 이월되었다.

나. 분석의견

첫째, 법원공무원교육원 강의실 확충공사 설계변경에 따라 다른 사업인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2] 예산 전액을 강의실 확충공사에 투입하였다.

대법원은 강의동 옥상에 200석 규모의 계단형 강의실을 설치하기로 하고 4억원을 편성하였다. 그런데 강의실 확충공사 설계가 8월에 완료된 후, 다시 9월에 전문교육과정 증설 등 교육제도 개선에 따른 교육인원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200석에서 230석 규모로 설

오덕근 예산분석관(whale@assembly.go.kr, 788-4641)

1) 예산코드: 일반회계 1131-309

2) 제1생활관(2001년 개관)의 구조 및 내부시설 리모델링 공사

계를 확대변경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비로 편성된 2억 5,500만원 전액을 강의실 확충공사로 용도를 바꾸었다.

[강의실 설계변경 내역]

(단위: ㎡)

변경시기	구분	4층 면적	5층 면적	수용좌석
2016. 09. 20.	변경 전	84.76	397.32	200석
	변경 후	160.52	466.04	230석

자료: 대법원

이와 같이 강의실 확충사업에 대한 사전검토가 미흡하여 설계 완료 직후 다시 설계를 변경함에 따라 최종 설계는 2016년 12월에 완료되었고, 실제 시공계약은 2017년 2월에 체결되었으며, 관련 예산의 대부분이 이월되었다.[3)]

이는 국회에서 승인한 예산내역을 임의로 변경하여 집행한 것으로서, 향후 대법원은 시설확충계획 수립 시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 적정한 예산을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법원공무원교육원 강의실 확충공사 예산은 시설비(420-03목)만 편성되고 설계비나 감리비가 편성되지 않았으므로, 공사비를 용도에 따라 세목별로 편성·집행하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2016년도 강의실 확충공사 예산으로 편성된 4억 5,500만원을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등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지 않고, 시설비(420-03목)로만 편성하였다. 이에 따라 2016년에 집행된 3,000만원은 강의실 공사 설계비였으나, 실시설계비(420-02목)가 아닌 시설비에서 집행되었고, 별도의 세목조정절차도 거치지 않았다.[4)]

향후 대법원은 사업비를 용도에 따라 세목별로 편성하고, 세목변경의 필요가 발생할 경우 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집행할 필요가 있다.

---

3) 2017년 현재 법원공무원교육원의 강의실 확충공사 총사업비는 10억 800만원으로 증액되어 시공 중이며,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4) 2017년도 예산 역시 시설비(420-03목)로만 편성되어 있으므로, 향후 시설비 가운데 일부를 감리비(420-04목)로 세목조정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다.

5 법원공무원교육원 인건비 과다편성

가. 현 황

교육원 인건비[1]는 법원공무원교육원 소속 공무원과 신규 채용된 수습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로 구성된다. 대법원은 동 사업의 기타직보수(110-02목) 예산액 15억 2,700만원 중 8억 2,700만원을 집행하고 공공요금으로 7억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다.

[법원공무원교육원 인건비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법원공무원교육원	5,347	5,347	0	△700	4,647	4,543	0	104
수습공무원 보수	1,527	1,527	0	△700	827	821	0	6

자료: 대법원

동 사업의 기타직보수는 법원공무원 신규임용자(시보공무원)에 대한 급여로서 5급 및 9급 신규임용자가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는 동안 지급된다.

나. 분석의견

교육계획에 따른 예산편성액이 실제 채용 및 교육과정과 괴리되어 불용액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향후 교육계획을 보다 정밀하게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2016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할 당시 전자소송 등 신규 제도 도입으로 인해 교육기간을 대폭 늘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교육기간을 기존과 같게 진행하면서 수습공무원 보수도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 8억 2,100만원을 집행하여 예산액 대비 53.8%만 집행하였다.

오덕근 예산분석관(whale@assembly.go.kr, 788-4641)

1) 예산코드: 일반회계 1102-191

[기타직보수 연도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B)	불용액	집행율 (B/A)
	본예산	추경(A)					
2014	797	797	0	797	777	20	97.5%
2015	1,021	1,021	0	1,021	747	274	73.2%
2016	1,527	1,527	△700	827	821	6	53.8%

자료: 대법원

대법원은 2015년도부터 교육기간 연장을 고려하여 동 예산을 확대편성한 바, 2014년 8억원에서 2016년 15억원으로 예산규모가 2배 가량 증가하였으나, 집행액은 7~8억원 내외이다.

인건비는 경직성 경비이고 예측가능성이 높은 예산이므로, 향후 대법원은 실현가능한 교육계획 수립을 통해 예산이 과다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

Ⅰ 결산 개요

1 현 황

가. 총수입·총지출 결산

2016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소관 결산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2016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4억 1,300만원(85.7%)이 감소한 6,9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4,800만원(228.6%)이 증가하였다.

[2016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2015 결산액(A)	2016				전년 대비 (C-A)
		예산액		결산액 (C)	추경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 산	21	482	482	69	△413	48

자료: 헌법재판소

2016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13억 6,200만원(3.4%)이 감소한 392억 3,1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24억원(6.5%)이 증가하였다.

[2016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2015 결산액(A)	2016				전년 대비 (C-A)
		예산액		결산액 (C)	추경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 산	36,831	40,592	40,592	39,231	△1,362	2,400

자료: 헌법재판소

오덕근 예산분석관(whale@assembly.go.kr, 788-4641)

나. 세입·세출 결산

2016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4억 8,200만원이며, 6,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를 모두 수납하였다. 헌법재판소 소관 세입 총계는 총수입과 동일하다.

[2016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세입 예산현액 (A)	징수 결정액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482	482	482	69	69	0	0	14.3

자료: 헌법재판소

2016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405억 9,200만원이며, 이 중 96.6%인 392억 3,100만원을 지출하고 13억 6,2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헌법재판소 소관 세출 총계는 총지출과 동일하다.

[2016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예산 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40,592	40,592	40,592	39,231	0	1,362	96.6

자료: 헌법재판소

2 2016년도 예산 관련 국회 논의사항

헌법재판소의 2016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재판자료확충 사업, ② 재판활동운영지원 사업, ③ 조직역량강화등 사업**이 있다.

재판자료확충 사업은 영문 헌법재판 판례집 번역료 조정 등에 따라 2,400만원이 감액(5억 7,400만원 → 5억 5,000만원)되었고, 재판활동운영지원 사업은 홍보활동 사업 중 일부 사업의 조정에 따라 3,200만원이 감액(14억 6,800만원 → 14억 3,600만원)되었다. 조직역량강화등 사업은 정책개발연구용역 등 사업의 조정에 따라 3,700만원이 감액(3억 800만원 → 2억 7,100만원)되었다.

3 2016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헌법재판소는 ① **국민의 기본권 보호 강화**, ② **재판활동 지원의 강화** 및 **연구활동의 효율적 지원**, ③ **국제교류·협력 강화**를 통한 국제적 위상 제고, ④ **헌법재판정보화의 체계적 추진**을 통한 재판업무의 원활한 지원 및 **향상된 대국민서비스 제공**, ⑤ **헌법재판 연구 및 교육 기능 강화**를 통한 중·장기 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을 2016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16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모범국선대리인 보수의 지급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선대리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국선대리인 활동의 충실화를 위해 직무에 충실한 국선대리인을 모범국선대리인으로 선발하고 추가적인 보수를 지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향후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II 개별 사업 분석

1 모범국선대리인 보수 지급근거 마련 필요

가. 현 황

국선대리인보수 등 사업[1]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2]에 근거하여 헌법재판 시 신청 또는 직권으로 선정되는 국선대리인의 보수를 지급하는 한편, 재판과 관련된 참고인으로 지정된 전문가의 진술료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예산현액 1억 4,400만원 중 1억 3,100만원을 집행하고, 1,300만원을 불용하였다.

[국선대리인보수 등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국선대리인보수 등	118	118	0	40	158	145	0	13
국선대리인보수	112	112	0	32	144	131	0	13

자료: 헌법재판소

나. 분석의견

헌법재판소는 모범국선대리인을 선발하여 추가적인 보수를 지급하고 있으나, 근거 규정이 미흡하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선대리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국선대리인 활동의 충실화를 위해 직무에 충실한 국선대리인을 모범국선대리인으로 선발하여 추가적인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3] 모

오덕근 예산분석관(whale@assembly.go.kr, 788-4641)

1) 예산코드: 일반회계 1035-305

2) 「헌법재판소법」 제70조(국선대리인) 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資力)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9조에 따른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범국선대리인은 전년도 11월부터 당해연도 10월까지의 종국결정사건을 대상으로 종국결과, 담당연구관 · 참여사무관 평가, 지역상담 참여실적 등을 기준으로 선발한다.

[모범국선대리인 제도 운용 현황]

구 분	내 용
선정범위	전년도 11월부터 당해연도 10월까지의 종국결정사건
선정기준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장이 판단 ① 종국결과 ② 담당연구관 및 참여사무관 평가 - 청구서 및 문건제출, 내용충실도, 사건난이도, 소송수행의 성실성 등 고려 ③ 지역상담 참여(지역상담실 운영 - 부산, 광주, 대구, 전주) 등
지급단가	국선대리인 보수 지급한도인 200만원에서 해당 모범국선대리인이 당해사건으로 기지급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지급
지급근거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헌법재판소 규칙) 제9조(보수) ① 국선대리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판관회의에서 정한다. ② 제1항의 보수는 사안의 난이, 국선대리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청구인의 수, 변론의 횟수, 기록의 등사나 청구인 면담 등에 지출한 비용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판장이 증액할 수 있다.
집행현황	2014년: 선정인원 4명, 집행액 390만원 2015년: 선정인원 3명, 집행액 315만원 2016년: 선정인원 4명, 집행액 440만원

자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모범국선대리인의 추가보수 지급근거를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헌법재판소 규칙) 제9조제2항의 국선대리인의 보수에 관해 사안의 난이, 직무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재판장이 증액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동 규정은 해당 사건에 대한 국선대리인 보수의 증액규정으로서, 연말에 통합적으로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한 대리인에게 추가보수를 지급하는 근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헌법재판소는 국선대리인의 노고 치하와 사기 진작, 모범사례 제시 등을 위해 모범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향후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동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3) 모범국선대리인은 2008년부터 선발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추가보수는 2011년부터 지급되었다.

집 필

총 괄 | 조용복 예산분석실장
고기석 사업평가국장

심 의 | 상지원 예산분석총괄과장
서세욱 산업예산분석과장
임명현 사회예산분석과장
박혜진 행정예산분석과장
박홍엽 공공기관평가과장

작 성 | 채미강 예산분석관
오명희 예산분석관
조흥연 예산분석관
오덕근 예산분석관

지 원 | 이인희 행정실무원

결산분석시리즈 Ⅰ

2016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발간일 2017년 8월 16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SBN 978-89-6073-017-5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17